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및 서강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0. 7. 13. ∼ 7. 24. [총 10일]

• 감사인원 : 22명(공인회계사 등 포함)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 분	학교법인	조직·인사	교비회계	입시·학사	시설·물품	산학연구	계
지적건수	5	11	7	13	5	12	53

나. 세부지적 및 처분: "감사결과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기부금 업무처리 부적정	
	○「사립학교법」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 ①, ② 관련 >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제8의2호에 따르면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 ① 관련 >
	「법인세법」제24조 및「소득세법」제34조에 따르면	ㅇ 시정 - 법인회계에 세입
	기부금 중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학교의 시설비・	처리하고 학교로
	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	전출하지 않은 바건기보그 하게
	기부금',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기부금은	발전기부금 합계 512,940천원
	'지정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776,753천원-263,813 천원)을 교비회계로
	【기부금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 ①	전출하기 바람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는 2017회계연도 A 등 3,977명이 교육	
	시설 건립,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기부금명 ㄱ)을	< ② 관련 >
	위해 기부한 162,290천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하는	○통보(국세청)
	등【붙임1】"학교교육 사용목적 기부금 법인회계 세입	
	처리 현황"과 같이 201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위 A 등 11,898명(누적인원)이 기부한 교육시설 건립,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등 학교교육 사용목적 기부금	
	합계 776,753천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음.	
	※ 위 법인세입처리 기부금 776,753천원 중 263,813천원 교비회계로 전출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관한 사항】 ②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는 2017.6.30. B가 학교법인에 사용	
	용도를 일임(법정부담금 전출)한 기부금 5,000천원에 대해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붙임2】 "지정기부금에	
	대한 법정기부금 발급 현황"과 같이 2017.6.부터 2020.6.	
	까지 위 B등 11명(기관)이 학교법인에 사용용도를 일임한	
	기부금 합계 2,115,007천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붙임1】

학교교육 사용목적 기부금 법인회계 세입처리 현황

회계 연도	기부자	기부목적	기부금	기부금명
	A 등 3,977명	교육시설 건립,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162,920	٦
2017	-	학생 장학금 지원	10,000	-
2017	-	학사지원, 결식학생 지원, 학생 생활비 지원	55,390	-
	-	학생 장학금 지원	20,000	-
	-	교육시설 건립,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201,455	٦
2018	-	학사지원, 결식학생 지원, 학생 생활비 지원	47,599	-
	-	학생 장학금 지원	20,000	-
	-	교육시설 건립,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103,097	٦
2019	-	학생 장학금 지원	15,000	-
	-	인성교육원 지원(교육용기본재산)	100,000	-
2020	-	교육시설 건립,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26,292	٦
2020	-	학생 장학금 지원	15,000	-
합계	11,898명(누적인원)		776,753	

【붙임2】

지정기부금에 대한 법정기부금 발급 현황

43.03		지정	기부금 내역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행		
연번	기부자	세입 처리일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발행일	발행액	비고
1	В	2017.6.30.	-	5,000	2017.07.18	5,000	
2	В	2017.6.30	-	5,000	2017.07.18	5,000	
3	-	2017.8.1	-	765	2018.01.05	765	-
4	-	2017.8.10	-	400	2017.8.24	400	-
	중략						
53	-	2019.10.18	-	4,293	2020.01.06	4,293	-
54	-	2019.11.20	-	4,293	2020.01.06	4,293	-
55	-	2019.12.20	-	4,293	2020.01.06	4,293	-
56	-	2019.12.31	-	70,000	2020.04.16	70,000	
57	-	2020.1.20	-	4,293	2020.07.15	4,293	-
58	-	2020.2.13	-	100,000	2020.07.15	100,000	
59	-	2020.2.20	-	4,293	2020.07.15	4,293	-
60	-	2020.2.28	-	30,000	2020.07.15	30,000	
61	-	2020.3.3	-	3,000	2020.03.09	3,000	
62	-	2020.3.10	-	17,000	2020.07.15	17,000	-
63	-	2020.3.31	-	4,293	2020.07.15	4,293	-
64	-	2020.4.20	-	4,293	2020.07.15	4,293	-
65	-	2020.6.5	-	4,397	2020.07.15	4,397	-
66	-	2020.6.19	-	4,094	2020.07.15	4,094	-
		합계		2,115,007		2,115,007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수익사업체 교육훈련비 지급 부적정	
	수익사업체 교육훈련비 지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43조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수익사업체 ○○은 2019.1.30. C의 ㄴ대학원 원우회비 200천원을 수익사업회계 교육훈련비로	○ 통보 - 수입사업체 ○○의 C, D, E를 관련 인사규정 등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기 바람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후련비 항계
		세입조치하기 바람

C 원우회비 지급 내역

연번	지출일	적요	금액	
1	2019.1.30.	C ㄴ대학원 1학기 원우회비	200	
2	2019.4.18.	C ㄴ대학원 10기 원우회비	2,000	
3	2019.10.16.	C ㄴ대학원원우회비(산행대회)	300	
4	2020.2.24.	C 느대학원 1학기 원우회비	200	
5	2020.6.29.	C ㄴ대학원10기 원우회비	3,000	
	합 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승소채권 관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 따르면	○ 기관경고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 통 보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학교법인은 확정된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는 2016. 1. 29. 서강대학교가 부담한	소송채권 합계 1,419,792천원에
	관리 및 운영 경비 합계 1,419,792천원을 서강대학교	대한 보전계획을
	다의 교육시설운영권을 가진 □□ [*] 로부터 지급 받는 법원의	교비회계로 전출
	화해권고결정(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이 확정	하기 바람
	되었음에도 2020.7.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07년 경부터 학교법인 서강대학교가 지분 49%, △△이 지분 51% 보유하고 있었고, 2018.9.13. △△의 지분 51%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이 인수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명의신탁 재산관리 부적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ㅇ기관경고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 통보
	아니 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법인회계 재원 <u>으</u> 로
	: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관리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 9필지에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해 학교법인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는 「부동산실명제법」 시행	서강대학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1995.7.1.) 이후인 2007. 11. 29. 농지인 경상북도 문경시	등 부동산에 대한
	영순면 오룡리 소재 토지(지목 전, 면적 458㎡)를 법인	권리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기
	회계에서 F(법인 상임이사 2008.7.~2013.7, 수익사업체 ▷▷	바람
	대표 2007.11.~2010.11.) 명의로 매입(9,874천원)하여 2020.7.	
	감사일 현재까지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붙임】	
	"학교법인 토지 차명 관리 현황"과 같이 2007.11.과	
	2008. 3. 위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 소재 토지	
	등 농지 9필지(면적 6,479㎡)를 법인회계에서 F의 명의로	
	매입하여 2020.7. 감사일 현재까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체 ▷▷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2007.11.과 2008.3.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 소재 토지 등 14필지(면적 27,987㎡)를 F 명의로 매입 후, 2009.6. 토지 5필지(면적 21,508㎡)를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로 명의 변경(잔여 9필지, 면적 6,479㎡)	

학교법인 토지 차명 관리 현황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m')	매입일	매입금액	명의 수탁자
1		-	전	458		9,874	
2		-	전	2,474		53,337	
3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	-	답	1,530	2007. 11. 29.	32,957	F
4	0 6 6 3 0 -1	-	답	98		1,507	
5		-	답	276		4,245	
6		-	답	92		8,428	
7	경상북도 문경시	-	전	161	2008 2 4	56,979	F
8	영순면 의곡리	-	전	1,326	2008. 3. 4.	95 00E	Г
9	-	-	전	64		85,085	
	합계			6,479		252,412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법인의	ㅇ기관경고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	
	하지 못하며,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사립	○ 통보
	대학정책과, 2019.12.)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기타 고정	- 금융기관에 예치
	부채로서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경우 교비회계 손실 및 불필요한 분쟁 등을 야기하므로	수익용기본재산 3곳의 임대보증금
	반드시 임대료,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	합계 10,363,255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천원 상당액을 확보하여 별도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는 일자 미상일부터 수익용기본재산	키키쉬키 비리
	▽▽(서울시 마포구 소재)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	
	1,340,000천원 중 674,000천원을 2020.7. 감사일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정부담금 전출 등으로 사용	
	하는 등 【붙임】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사용 현황"과	
	같이 일자 미상일부터 위 ▽▽ 등 수익용기본재산 3곳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 합계 11,254,750천원 중	
	10,363,255천원을 2020.7. 감사일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	
	하지 않고 법정부담금 전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사용 현황

연번	수익용기본재산 (소재)	임대보증금 수령액	임대보증금 사용액	임대보중금 잔액 (2020. 7. 기준)
1	▽▽ (서울시 마포구 소재)	1,340,000	674,000	666,000
2	- (서울시 마포구 소재)	8,809,750	8,584,255	225,495
3	- (서울시 마포구 소재)	1,105,000	1,105,000	-
합계		11,254,750	10,363,255	891,495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교원 신규채용 시 법인 이사장 참여 부적정	
	○「사립학교법」제53조의2 및 제70조의2에 따르면 교원 및	ㅇ 경고(2명)
	사무직원의 임용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사립학교법」제19조 및「학교법인 서강	。 ろめの聞)
	대학교 정관」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에	ㅇ 주의(2명)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ㅇ 통보
	있고, 「서강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 제2항 제17호에	- 법인 임원이 교직원 면접 심사에 참석
	따르면 총장은 학과, 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추천된	하지 않도록 방안을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후 신규임용 교원 최종	마련하기 바람
	후보자를 결정하여 임용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는 2019. 11. 28. '2020학년도 1학기	
	교원 신규 임용 관련 절차 준수 통보'(학법 제19-149) 문서를	
	통해 교원 임용 시 규정에도 없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면접을 총장의 임용제청 전에 추진하도록 교무처에 요청	
	하는 등 【붙임1】 "교원 신규채용 면접심사 시 법인	
	이사장 참석 요구 공문 통보 현황"과 같이 2019. 11. 28.	
	부터 2019. 12. 10.까지 총 3건의 문서를 통해 교원 임용 시	
	규정에도 없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면접을 총장의	
	임용제청 전에 추진하도록 서강대학교 교무처에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장 H는 2017. 5. 12.에 실시된	
	서강대학교 총장 주관 2017학년도 1학기 교원 신규 임용	
	관련 면접심사에 참석하여 피면접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붙임2】 "교원 신규채용 면접심사 시 법인 이사장	
참석 현황"과 같이 위 이사장 H는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실시된 28차례의 서강대학교 총장 주관 교원 신규	
임용 관련 면접심사에 참석하고 피면접자에게 질문을 한	
사실이 있음.	

【붙임1】 교원 신규채용 면접심사 시 법인 이사장 참석 요구 공문 통보 현황

연번	문서번호	문서 시행일	발신자	수신자	문서제목
1	학법 제19-149	2019. 11. 28.	이사장	총장	2020학년도 1학기 교원 신규 임용 관련 절차 준수 통보
2	학법 제19-153	2019. 12. 5.	이사장	총장	2020학년도 1학기 교원 신규 임용 관련 절차 준수 재촉구
3	학법 제19-156	2019. 12. 10.	이사장	총장	2020학년도 1학기 교원 신규 임용 관련 이사장 면접 추진 3차 지시

【붙임2】

교원 신규채용 면접심사 시 법인 이사장 참석 현황

연번	면접일	임 용 일	임용 직위	채용 학과	성 명	이사장 면접 참여 및 질문 여부
1	2017-05-12	2017-09-01	조교수	미국문화전공	-	0
2	2017-05-12	2017-09-01	부교수	경제학전공	-	0
3	2017-12-04	2018-03-01	조교수	국어국문학전공	-	0
4	2017-12-04	2018-03-01	조교수	국제대학원	-	0
5	2017-12-04	2018-03-01	조교수	글로벌한국학전공	-	0
6	2018-01-19	2018-03-01	부교수	법학전문대학원	-	0
7	2018-08-29	2018-08-31	조교수	동아연구소	-	0
8	2018-05-01	2018-09-01	부교수	컴퓨터공학전공	-	0
9	2018-05-01	2018-09-01	부교수	미디어&엔터테인먼트전공	-	0
10	2018-06-07	2018-09-01	교수	생명과학전공	-	0
11	2018-10-08	2018-10-31	조교수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	0
12	2018-11-27	2019-03-01	조교수	수학전공	-	0
13	2018-11-27	2019-03-01	조교수	생명과학전공	-	0
14	2018-11-27	2019-03-01	교수	화학전공	-	0
15	2018-11-28	2019-03-01	조교수	중국문화전공	-	0
16	2018-11-28	2019-03-01	부교수	화공생명공학전공	-	0
17	2018-11-28	2019-03-01	조교수	전인교육원	-	0
18	2019-01-21	2019-03-01	조교수	유럽문화전공	-	0
19	2019-01-21	2019-03-01	조교수	아트&테크놀로지전공	-	0
20	2019-01-21	2019-03-01	조교수	전인교육원	-	0
21	2019-01-21	2019-03-01	조교수	전인교육원	-	0
22	2019-01-21	2019-03-01	조교수	전인교육원	-	0
23	2019-01-30	2019-03-01	조교수	신학대학원	-	0
24	2019-04-23	2019-09-01	조교수	경제학전공	-	0
25	2019-04-23	2019-09-01	조교수	경영학전공	-	0
26	2019-04-23	2019-09-01	조교수	경영학전공	-	0
27	2019-06-04	2019-09-01	조교수	화학전공	-	0
28	2019-06-04	2019-09-01	조교수	아트&테크놀로지전공	-	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교원 채용 절차 부적정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제43조의7 제1항에 따르면	ㅇ기관경고
	교원 인사에 관한 이 정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서강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임용심사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	
	등으로 하며, 해당 학과장은 소속 학과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각 단계별 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심사를 진행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임용 후보자를 심사결과에 따라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성적순 혹은 무순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는 학과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그 결과가	
	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한 것이거나 본교 발전에 유익	
	하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과의	
	심사결과를 조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임용제청 여부에	
	관하여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교무처는 2019학년도 2학기 컴퓨터공학과	
	교수 신규채용* 중 학과에서 추천한 후보자 3인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원 '미추천'하자, 후보자에	
	대한 채용 진행 여부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결재('19. 5. 31.)한 것을	
	근거로 2019. 6. 3. 후보자에게 불합격 통지하고 채용	
	절차를 종결한 사실이 있음.	

연번			<u></u> 적	사	 항		처	분
	* (치 -	용경과)						
	회의일자		회의 결			비고		
	2019.5.17.	컴퓨터공학과 교수회의		무순위로 공학	따라 3배수 t부 교원인사	l 등 15명 참여		
	2019.5.23.	공학부 교원인사위원회	성적순으로 추천 전원 '미추·		신시위원회에			
	2019.5.28.	교원인사위원회	※ 학과의		· 조정하거나 없음	J 등 8명 참여		
						컴퓨터공학과		
	교수	- 신규채용 집	설차들 20	19. 8. 19	9. 재차 전	인행하여 총장		
	면접	을 실시하고,	후보자*	* 중 K를	· 학교법인	<u> </u> 서강대학교		
	이것	나 장에게 임용	·제청('19.	9. 3.)한	사실이 🤉	있음.		
	** 후보ス	} K 84.555, L	84.545, M	80.574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직원 임용 절차 미준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소속 사무	○ 경고(8명)
	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제84조 제3항에 따르면 대학교의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총장은 2018. 4. 1. 직원 N을 신규채용하면서	
	이사장에게 제청하지 아니한 채, 직접 채용하고 2018.	
	4. 2. 이사장에게 채용을 통보하는 등 【붙임】"신규	
	직원 총장 임용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위 N 등 11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하지 아니하고 총장이 직접 채용하고 이사장에게	
	채용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신규 직원 총장 임용 현황

연번	임용일	임용 직위	직렬	성명	이사장 임용 제청 여부
1	2018.04.01	직원	사무직	N	
2	2018.04.01	직원	사무직	-	
3	2018.04.01	직원	사무직	-	X (2019.4.2. 이용경제 토버)
4	2018.04.01	직원	사무직	-	(2018.4.2. 임용결과 통보)
5	2018.04.01	직원	사무직	-	
6	2018.04.01	직원	사무직	-	
7	2020.03.09	직원	사무직	-	
8	2020.03.09	직원	기술직	-	
9	2020.03.09	직원	기술직	-	X (2020.3.6. 임용결과 통보)
10	2020.03.09	직원	기술직	-	
11	2020.04.01	직원	사무직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9	직원 승진 임용 부당	
	○「사립학교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ㅇ경징계(1명)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제84조 제1항에	ㅇ경고(4명)
	따르면 일반직원의 승진은 임용권자가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강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직원을	
	차장 이상의 직위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 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는 2020. 2. 25. 「연차승진에 의한 차장에 관한	
	내규」(총장결재)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2020. 4. 1. 총장 결재만으로 사무직	
	차장 대우 O를 차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붙임】 "차장	
	임의 승진 현황"과 같이 2020. 4. 1. 위 O 등 5명을 「직원	
	인사규정」이 아닌 「연차승진에 의한 차장에 관한 내규」에	
	따라 별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차장으로 승진 임용한 사실이 있음.	

차장 임의 승진 현황

연번	직렬	성명	신규 임용일	과장 임용일	차장대우 임용일	차장 숭진 임용일
1	사무직	О	1983. 9. 1.	2003. 8. 6.	2011.12. 1.	2020. 4. 1.
2	사무직	-	1987. 7. 1.	2003. 8. 6.	2015. 7. 1.	2020. 4. 1.
3	사무직	-	1990. 3. 1.	2003. 8. 6.	2017. 8. 1.	2020. 4. 1.
4	사무직	-	1990. 3. 1.	2003. 8. 6.	2017. 8. 1.	2020. 4. 1.
5	사무직	-	1991. 3. 1.	2005. 3. 2.	2019.10. 1.	2020. 4. 1.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교직원 수사 관련 문서 관리 부적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ㅇ경고(4명)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업무수행의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	
	·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서강대학교 문서규정」제2조 및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문서"라 함은 본교 행정부서 내부 또는 상호간	
	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및 본교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뜻하고, 처리과는 교내	
	및 교외용 문서 수·발신대장(별지 제6·1호)을 비치하여 문서	
	처리사항을 기록·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교무처는 '17. 5.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우편물로 접수된 '공무원 등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문서를 수·발신대장에 기록·정리하지 아니하고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접수 등록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임의 보관하는 등		
	【붙임】 "접수문서 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17. 5. 25.		
	부터 '20. 3. 30.까지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우편물로 접수된 '공무원 등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등 21건의 문서를 수·발신대장에 기록·정리하지 아니		
	하고 접수 등록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6건의 문서는 분실하여 종합감사		
	기간("20. 7. 13.~7. 24.)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수신한 사실이 있음.		

접수문서 관리 부적정 현황

연 번	문서명	발신기관	수신 부서	수신일	등록 번호 발급 및 대장 등재 여부
1	공무원 등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중앙지검	교무팀	2017.5.25.	X
2	공무원 등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중앙지검	교무팀	2017.6.29.	Х
3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서울남부지검	교무팀	2017.10.25.	Х
4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인천지검 부천지청	교무팀	2018.3.12.	Х
5	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북부지검	교무팀	2018.3.12.	X
6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서부지검	교무팀	2018.3.26.	X
7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중앙지검 <재수신>	교무팀	2018.6.11.	X
8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중앙지검 <재수신>	교무팀	2018.6.11.	Х
9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중앙지검 <재수신>	교무팀	2018.7.2.	Х
10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중앙지검	교무팀	2018.10.1.	X
11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중앙지검 <재수신>	교무팀	2018.12.14.	X
12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서부지검	교무팀	2019.1.7.	X
13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서부지검	교무팀	2019.1.15.	X
14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서부지검	교무팀	2019.1.21.	X
15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중앙지검 <재수신>	교무팀	2020.2.8.	X
16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서부지검	교무팀	2020.1.14.	X
17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서부지검	교무팀	2020.1.21.	X
18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서부지검	교무팀	2020.2.4.	X
19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중앙지검 <재수신>	교무팀	2020.2.11.	Х
20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서부지검	교무팀	2020.3.6.	X
21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서울서부지검	교무팀	2020.3.30.	X

【붙임】

결격사유 미조회 교직원 신규채용 현황

연번	구분	소속	성명	임용일
1	교원	ㄹ전 공	P	2017-03-01
2	교원	-	-	2017-03-01
3	교원	-	-	2017-03-01
4	교원	-	-	2017-09-01
5	교원	-	-	2017-09-01
6	교원	-	-	2017-09-01
7	교원	-	-	2017-09-01
8	교원	-	-	2018-03-01
9	교원	-	-	2018-03-01
10	교원	-	-	2018-03-01
11	교원	-	-	2018-03-01
12	교원	-	-	2018-08-31
13	교원	-	-	2018-09-01
14	교원	-	-	2018-09-01
15	교원	-	-	2018-09-01
16	교원	-	-	2018-10-31
17	교원	-	-	2019-03-01
18	교원	-	-	2019-03-01
19	교원	-	-	2019-03-01
20	교원	-	-	2019-03-01
21	교원	-	_	2019-03-01
22	교원	-	-	2019-03-01
23	교원	-	-	2019-03-01
24	교원	-	_	2019-03-01
25	교원	-	-	2019-03-01
26	교원	-	-	2019-03-01
27	교원	-	-	2019-03-01
28	교원	-	-	2019-03-01
29	직원	-	-	2018-04-01
30	직원	-	-	2018-04-01
31	직원	-	-	2018-04-01
32	직원	-	-	2018-04-01
33	직원	-	-	2018-04-01
34	직원	-	-	2018-04-01
35	직원	-	-	2020-03-09
36	직원	-	-	2020-03-09
37	직원	-	-	2020-03-09
38	직원	-	-	2020-03-09
39	직원	-	-	2020-04-01

【참고】

< 국가공무원법(발췌)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발制 >-

제83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때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발췌 >-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전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때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정상적으로 직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2	미허가 사외이사 겸직 연장 및 출강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①관련>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ㅇ경고(3명)
	있고,「국가공무원법」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I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서강	I I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은	ㅇ 경고(1명)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강대학교 교원	
	겸직 허가 지침」 제6조에 따르면 겸직을 허가 받고자	
	하는 교원은 겸직 요청 기관장의 겸직요청서를 첨부한	
	겸직 승인 신청서를 학과장 및 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등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하고, 「서강	
	대학교 전임교원 대외기관 출강에 관한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이 본교 이외 타 기관에서 출강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개강 1개월 전에 출강승인	
	신청서 및 출강기관이 발급한 출강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미허가 사외이사 겸직 연장】①	
	- 서강대학교 ㅁ전공 Q는 '15.3.17. ◁◁ 사외이사 겸직	
	기간(′15. 3. 18. ~ ′17. 3. 17.)이 만료되었음에도, 총장 허가	

연번	지 적 사 항	처 -	분
	없이 위 사외이사 겸직 기간을 '20.3.17.까지 연장하는		
	등 【붙임】 "미허가 사외이사 겸직 연장 현황"과 같이		
	겸직 기간이 만료된 위 Q 등 3명은 총장 겸직연장 허가		
	없이 << 등 3개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연장한 사실이		
	있음.		
	【미허가 대외기관 출강】②		
	- 서강대학교 ㅂ전공 R은 2017학년도 2학기 ⟨╳⟩대학교 대학원		
	에서 개설한 '근대 국어자료 강독' 과목 강의(주당 3시간)를		
	총장의 대외기관 출강 허가 없이 외래 출강한 사실이		
	있음.		

미허가 사이외사 겸직 연장 현황

연 번	소속	성명	겸직기관명 (직위)	근무 형태	최초 허가일 (겸직기간)	미허가 겸직기간	보수총액 (연도)
1	ㅁ전공	Q	< < (사외이사)	비상근	′15.3.17. (′15.3.18.∼′20.3.17.)	′17.3.18.~ ′20.3.17.	190,059 ('17, '18, '19)
2	-	-	- (사외이사)	비상근	′16.4.25. (′16.3.18.∼′20.7.25.)	'19.3.18.~ '20.7.25. 감사일 현재	70,147 (′19, ′20)
3	-	_	- (사외이사)	비상근	′17.3.31 (′17.3.16.~′20.3.20.)	′19.3.19.~ ′20.3.20.	65,434 (′19)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연번 13	 연구년 교원 의무사항 미이행 ○ 「서강대학교 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제2조, 제5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년 복귀 후 본교에 유익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발전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연구년을 허가하고, 연구년 후 연구결과보고서를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적어도 2배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본교에서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스전공 S는 연구년(기간: '17.3.1. ~ '18.2.28.) 종료 후 의무근무기한인 '20.2.28.까지 근무하지 않고 '18.12.31. 퇴직하는 등 【붙임】 "연구년 교원 의무근무기한 미준수 퇴직 현황"과 같이 2017.3.부터 2020.2. 기간 중 연구년을 다녀온 위 S 등 교원 4명은 연구년 종료 후 의무근무기한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사실이 있고, 	○ 중고(4명) ○ 동보 - 연구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고, 연구년 종료 후 의무근무기한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 등을 마련 하기 바람
	'18. 12. 31. 퇴직하는 등 【붙임】 "연구년 교원 의무근무기한 미준수 퇴직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0. 2. 기간 중 연구년을 다녀온 위 S 등 교원 4명은 연구년 종료 후 의무근무기한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 등을 마련 하기 바람

연구년 교원 의무근무기한 미준수 퇴직 현황

연번	학과	직급	성명	연구년 연구되제명		년 기간	의무	퇴직일 (비고)
	의 역 4	行日	78.6	한무과제경	시작일 종료일		근무기한	
1	스 전공	-	S	장애인용 착용형 로봇의 상용화 연구 진행	2017.3.1	2018.2.28	2020.2.28	2018.12.31. (의원면직)
2	-	-	-	독일형법 연구 및 집필	2017.3.1	2018.2.28	2020.2.28	2018.4.30. (의원면직)
3	-	-	-	작품 활동	2018.3.1	2019.2.28	2021.2.28	2020.2.29. (의원면직)
4	-	-	-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 교육시스템의 접목 가능성 연구	2019.3.1	2019.8.31	2020.8.31	2020.2.29. (의원면직)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4	당연퇴직 미처리 등	
	○ 「사립학교법」제58조의2,「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ㅇ경징계(2명)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직위가 해제된	○ 경고(1명)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시정(회수)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대학교	- 금고 이상의 형이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대학교에	확정되었음에도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사립학교법」제57조에 따르면	당연퇴직 처리 없이 부당하게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지급된 급여 합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40,025,05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 교비회계에
	임용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	세입조치하기 바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사망·	○통보
	전출·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 형법 제347조 위반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T를 법령
	되어 있는데도,	및 정관이 정하는
	- 서강대학교는 2020. 2. 6. ○전공 T가 '형법 제347조(사기)'	바에 따라 조치 하기 바람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실형선고(징역 1년 6월)와 함께 재판부	, , , , ,
	직권으로 법정구속(2020.1.31.경)되었음에도 20. 1학기	
	개설교과목 강의 배제만 하고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별도조치>
	2020. 2월 급여 10,699천원을 정상 지급하는 등 【붙임】	○ 통보(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구속 수감자 급여 지급 내역"과 같이 2020. 2.부터 2020. 7. 24.	<u> </u>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감사일 현재까지 구속되어 수감 중인 위 T의 급여 합계	
	65,823,25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나아가, 2020. 4. 29. 위 T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대법원)되었으나 2020. 7. 24. 감사일 현재까지 당연	
	퇴직 처리하지 않고, 급여 합계 33,575,500원 전액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또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하는 위 T를 당연퇴직일인 2020.4.29.부터 2020.7.24.	
	감사일 현재까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자격을 유지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구속 수감자 급여 지급 내역

기간 지급액	'20. 2. ~ 4. (3개월분)	'20.5. ~ 7. (당연퇴직일 이후)	계
급여 지급액(A)	32,247,750	33,575,500	65,823,250
직위해제 시 지급액(B)	25,798,200	-	25,798,200
급여 차액(A-B)	6,449,550	33,575,500	40,025,050

^{※ 1)} 직위해제 시('20.2.)부터 4월('20,4.)까지 봉급액의 8할 지급

²⁾ 징역 1년 6월의 형 확정일('20.4.29.) 이후 법령에 따라 당연 퇴직

기관명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5	이사회 결정사항 처리 지연 등	
	○ 「사립학교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ㅇ경고(1명)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사립	
	학교법」제58조의2 및 제61조에 따르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제31조 및 제48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H는 2020.4.28. '20학년도 제	
	1차 이사회'에서 스전공 U{('사기죄'로 벌금형(2,000만원)	
	확정, '19.10.24.}의 직위해제 처분이 심의·결정되었는	
	데도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64일 경과한 2020.7.1.	
	위 U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한 사실이 있음.	
	· 그로 인해, 서강대학교는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위 U의 봉급 4,266,250원을 감액하지 않고 교비회계	
	에서 전액(21,331,2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U 교수 급여 지급 내역(단위:원)	
	지급액 '20. 5. '20. 6. 계	
	실제 급여 지급액(A) 9,978,250 11,353,000 21,331,250	
	직위해제 시 지급액(B) 7,982,600 9,082,400 17,065,000 지급 차액(A-B) 1,995,650 2,270,600 4,266,25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부당 부여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①,② 관련 >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통보(문책 3명)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독립	<① 관련 >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르면 취업지원	○ 경고(2명)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 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 또는 10%의 가점을 부여하고, 채용	○ 통보
	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 취업지원 대상자 등 가점 부여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관련 법령 등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부당】①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 취업지원 대상자
	- 서강대학교는 2018. 2. 21. 사무직원(6명) 채용을 위하여	가점을 제대로
	서류전형(1-1단계, 100점 만점)을 진행하면서, 취업지원 대상자	부여하지 않아 2차 서류전형에서
	V(수험번호 ********, 독립유공자손, 취득점수 89점)에게 '만점	탈락한 지원자에
	대비 가점(10점)'이 아닌 '취득점수 대비 가점(8.9점)'을 부여	대하여 차기 채용시 전형 기회 부여
	하는 등 【붙임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부적정 현황"과	등 구제방안을
	같이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 정규직원을 채용하면서	검토하기 바람
	위 V 등 취업지원 대상자 14명에게 '만점대비 가점'이	
	아닌 지원자 '취득점수 대비 가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고,	
	· 또한, 2018. 2. 28. 서류전형(1-2단계, 100점 만점) 결과, 합격자	
	35명을 결정하면서 위 V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2점*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붙임2】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부여 부당 현황"과 같이 합격권 내 순위(32순위)였던	
	위 V가 서류전형(1-2단계) 36순위로 탈락한 사실이 있음.	
	* 만점(100점) 대비 가점(10%) 10점이 아닌 취득점수(80점) 대비	
	가점(10%) 8점만 부여	
	【계약직 경력 부당 가점 부여】②	
	- 서강대학교는 2018.1.22. '2018년 정규직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공고('18.1.31.) 후 지원자 667명에 대한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서강대학교 계약직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 W(수험번호 *******) 등 4명에게 기본	
	계획, 공고와 다르게 가산점수 각 10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W 등 4명은 서류전형(1-2단계)에서 모두 불합격	

【붙임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부적정 현황

				실저	기점 부여			정싱	가점 부여	
/18학년도 정규직원 채용 <1-1단계 서류전형>	직종	성명	취득점수 (만점 100점)	가점 비율	가점 [취득점수× 비율(5,10)%]	점수 (가점포함)	취득점수 (만점 100점)	가점 비율	가점 [만점× 비율(5, 10)%]	점수 (가점포함)
		V	89.0점	10%	8.90점	97.90점	89.0점	10%	10점	99.0점
		-	95.5점	10%	9.55점	105.05점	95.5점	10%	10점	105.5점
	사무직	-	97.5점	5%	4.88점	102.38점	97.5점	5%	5점	102.5점
	(입학사정관	-	96.0점	5%	4.80점	100.80점	96.0점	5%	5점	101.0점
′18학년도	포함)	-	93.0점	5%	4.65점	97.65점	93.0점	5%	5점	98.0점
채용 <1-1단계		-	88.0점	10%	8.80점	96.80점	88.0점	10%	10점	98.0점
		-	90.5점	5%	4.53점	95.03점	90.5점	5%	5점	95.5점
서듀선영> 	사무직 (국제교류)	-	95.0점	5%	4.7 5점	99.75점	95.0점	5%	5점	100.0점
		-	94.5점	5%	4.73점	99.23점	94.5점	5%	5점	99.5점
		-	94.5점	5%	4.73점	99.23점	94.5점	5%	5점	99.5점
		-	93.5점	5%	4.68점	98.18점	93.5점	5%	5점	98.5점
		-	92.5점	5%	4.63점	97.13점	92.5점	5%	5점	97.5점
	사무직 (입학사정관	-	96.67점	10%	9.67점	106.33점	96.67점	10%	10점	106.67점
		-	93.33점	10%	9.33점	102.67점	93.33점	10%	10점	103.33점
		-	93.33점	5%	4.67점	98.00점	93.33점	5%	5점	103.0점
		V	80.00점	10%	8.00점	88.00점	80.00점	10%	10점	90.00점
′18학년도	포함)	-	76.67점	5%	3.83점	80.50점	76.67점	5%	5점	81.67점
		-	<i>7</i> 1.67점	5%	3.58점	75.25점	<i>7</i> 1.67점	5%	5점	76.67점
<1-2단계		-	65.00점	5%	3.25점	68.25점	65.00점	5%	5점	70.00점
서뉴선영> 		-	91.67점	5%	4.58점	96.25점	91.67점	5%	5점	96.67점
		-	88.33점	5%	4.42점	92.75점	88.33점	5%	5점	93.33점
	사무직 (국제교류)	-	73.33점	5%	3.67점	77.00점	73.33점	5%	5점	78.33점
	(1.112-11)	-	68.33점	5%	3.42점	71.75점	68.33점	5%	5점	73.33점
		-	68.33점	5%	3.42점	71.75점	68.33점	5%	5점	73.33점
′19학년도 정규직원	ול דו (י	-	92.5점	5%	4.625점	97.125점	92.5점	5%	5점	97.5점
채용 <서류전형*>	사무직	-	83.33점	5%	4.17점	87.50점	83.33점	5%	5점	88.33점
*사무직은 1-1, 1-2단계로 진행	기술직	-	86.67점	5%	4.33점	88.33점	86.67점	5%	5점	91.67점

【붙임2】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부당 현황

	직종 <합격권>	성명 -		서류전형(1-2단계) 결과									
기원기비			실제						정상				
시험구분			취득 점수	가점 (취득점수 ×10%)	가점 포함	순위	합격 여부	취득 점수	가점 (만점×10%)	가점 포함	순위	합격 여부	
/10초나 1 ㄷ	사무직 (입학사정관 포함) <35위>	규직원 (입학사정관 채용 포함)	- 등 10명	91.67점		91.67점	22위	합격	91.67점		91.67점	22위	합격
정규직원 채용			- 등 3명	90.00점		90.00점	32위	합격	90.00점		90.00점	32위	합격
<1-2단계 서류전형>		-	88.33점		88.33점	35위	합격	88.33점		88.33점	36위	불합격	
		v	80.00점	8점	88.00점	36위	불합격	80.00점	10점	90.00점	32위	합격	

【참고】

계약제 직원 부당 가점 부여 현황

	직종 <합격권>				서투	구전형(1	-1단계)	결과				
시험구분		성명			실제				정상		비고	
ハゼナモ 		}격권> °°	취득 점수	가점	가점 포함	순위	합격 여부	취득 점수	순위	합격 여부	,	
	사무직 (입학사정관 포함) <250위>		W	93.5점	10점	103.5점	2위	합격	93.5점	147위	합격	입학팀 근무 ('16.8.22.~'17.8.31.)
′18년학년도		-	93.5점	10점	103.5점	2위	합격	93.5점	147위	합격	발전홍보팀 근무 ('17.2.8.~'19.2.7.)	
│ 정규직원 │ 채용 │ <1-1단계		-	89.5점	10점	99.5점	6위	합격	89.5점	269위	불합격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근무 ('17.2.1.~'19.1.31.)	
서류전형>		-	89.5점	10점	99.5점	6위	합격	89.5점	269위	불합격	경영학부 행정팀 근무 ('16.2.26.~'18.2.25.)	
		- 등 20명	90.0점		90.0점	251위	불합격	90.0점	249위	합격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7	기금 이자 및 법인세 환급금 관리 부적정	
	○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는 적립금은	ㅇ경고(3명)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 • 건축적립금 • 장학적립금 • 퇴직적립금 및	○통보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	•
	적립금으로 구성하며,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에서 발생한 수익은
	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각 기금별로 구분 하여 계상하고
	- 서강대학교는 2017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금별	적립목적대로 사용
	이자 수입에 대한 사용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각	할 수 있도록 관리 하기 바람
	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금융기관에 일괄 예치함	
	으로써 2017.3.7.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4,818,896원을	
	목적 없이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는 등 【붙임】 "기금	
	이자 및 법인세 환급금 기금별 미구분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0. 7.까지 예산편성 시 기금이자 수입에	
	대한 사용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각 기금별 예치	
	내역을 구분관리하지 않음으로써 5개 기금(건축, 장학,	
	연구, 퇴직, 특정목적)에서 발생한 이자 및 법인세 환급금	
	합계 2,104,237,915원*을 목적 없이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 사실이 있음.	
	* (이자) 1,708,767,185원 + (법인세 환급금) 395,470,730원	

기금이자 및 법인세 환급금 기금별 미구분 현황

<기금이자>

(단위 : 원)

연번	이자발생일	기금명칭	이자수입	연번	이자발생일	기금명칭	이자수입
1	2017.03.07.	미상	4,818,896	69	2018.08.24.	미상	40,074,913
2	2017.03.17.	미상	5,131,782	70	2018.09.04.	미상	20,147,558
3	2017.03.24.	미상	6,977,541	71	2018.09.21.	미상	4,717,210
4	2017.03.28.	미상	3,793,793	72	2018.09.28.	미상	11,367,461
5	2017.03.31.	미상	2,112,466	73	2018.10.12.	미상	20,167,265
6	2017.03.31.	미상	9,017,733	74	2018.10.23.	미상	5,598,902
7	2017.04.04.	미상	4,474,295	75	2018.11.09.	미상	5,122,364
8	2017.04.11.	미상	4,783,038	76	2018.11.23.	미상	6,501,721
9	2017.04.18.	미상	5,032,901	77	2018.12.07.	미상	17,084,570
10	2017.05.02.	미상	4,439,083	78	2018.12.21.	미상	7,303,894
11	2017.05.12.	미상	4,791,391	79	2018.12.31.	미상	8,436,914
12	2017.05.19.	미상	3,778,501	80	2019.01.08.	미상	44,463,684
13	2017.05.23.	미상	4,984,216	81	2019.01.22.	미상	8,269,367
14	2017.05.30.	미상	5,604,009	82	2019.02.12.	미상	14,166,913
15	2017.05.30.	미상	6,201,073	83	2019.02.12.	미상	7,083,456
16	2017.06.09.	미상	2,003,763	84	2019.02.12.	미상	11,590,902
17	2017.06.30.	미상	13,939,642	85	2019.02.15.	미상	14,421,405
18	2017.07.11.	미상	3,071,798	86	2019.02.15.	미상	14,421,405
19	2017.07.31.	미상	89,960	87	2019.02.15.	미상	20,968,061
20	2017.08.29.	미상	13,330,192	88	2019.02.15.	미상	13,288,010
21	2017.09.05.	미상	5,248,455	89	2019.02.19.	미상	6,683,643
22	2017.09.29.	미상	7,843,472	90	2019.02.19.	미상	4,248,557
23	2017.09.29.	미상	11,040,438	91	2019.02.22.	미상	9,246,825
24	2017.10.10.	미상 미상	8,344,113	92	2019.02.22.	미상 미상	86,537,700
25	2017.10.20.	미상	2,435,358	93 94	2019.02.22.	미상	6,007,769
26 27	2017.11.10.	미상	9,553,094	94	2019.02.25.	미상	93,999,459
28	2017.11.28. 2017.12.08.	미상	20,628,033	96	2019.03.22. 2019.03.29.	미상	863,164 15,789,062
29	2017.12.08.	미상	6,895,026	97	2019.03.29.	미상	1,725,840
30	2017.12.19.	미상	4,907,018	98	2019.05.24.	미상	2,458,049
31	2017.12.20.	미상	7,631,574	99	2019.06.11.	미상	1,565,694
32	2017.12.29.	미상	12,085,061	100	2019.06.21.	미상	3,139,478
33	2018.01.30.	미상	26,167,140	101	2019.06.28.	미상	4,997,712
34	2018.02.02.	미사	10,235,450	102	2019.07.19.	미사	3,966,484
35	2018.02.02.	미상	10,235,450	103	2019.07.30.	미상	1,213,610
36	2018.02.02.	미상	10,235,450	104	2019.08.09.	미상	41,112,130
37	2018.02.02.	미상	10,702,743	105	2019.08.23.	미상	4,895,222
38	2018.02.13.	미상	36,455,416	106	2019.08.23.	미상	26,702,547
39	2018.02.13.	미상	13,559,418	107	2019.09.27.	미상	5,813,882
40	2018.02.13.	미상	4,478,010	108	2019.09.30.	미상	7,583,051
41	2018.02.20.	미상	6,520,009	109	2019.10.25.	미상	6,590,117
42	2018.02.20.	미상	9,780,003	110	2019.11.08.	미상	1,301,690
43	2018.02.20.	미상	7,933,862	111	2019.11.22.	미상	6,644,014
44	2018.02.23.	미상	14,421,347	112	2019.12.13.	미상	2,033,655
45	2018.02.23.	미상	14,421,347	113	2019.12.27.	미상	7,495,803
46	2018.02.23.	미상	12,591,247	114	2019.12.31.	미상	4,660,754

연번	이자발생일	기금명칭	이자수입	연번	이자발생일	기금명칭	이자수입
47	2018.02.27.	미상	14,817,331	115	2020.01.10.	미상	5,131,633
48	2018.02.27.	미상	14,817,331	116	2020.01.17.	미상	6,042,302
49	2018.02.27.	미상	29,440,800	117	2020.01.28.	미상	8,946,632
50	2018.02.28.	미상	29,440,800	118	2020.02.11.	미상	51,691,769
51	2018.02.28.	미상	29,440,800	119	2020.02.11.	미상	21,684,999
52	2018.03.23.	미상	559,753	120	2020.02.14.	미상	52,129,838
53	2018.03.30.	미상	15,453,007	121	2020.02.18.	미상	31,047,519
54	2018.04.03.	미상	2,612,181	122	2020.02.18.	미상	4,782,570
55	2018.04.24.	미상	1,199,946	123	2020.02.18.	미상	14,456,181
56	2018.05.25.	미상	18,826,414	124	2020.02.18.	미상	20,070,375
57	2018.05.25.	미상	1,896,901	125	2020.02.18.	미상	4,013,530
58	2018.05.25.	미상	2,519,003	126	2020.02.21.	미상	9,575,805
59	2018.06.05.	미상	3,024,752	127	2020.02.21.	미상	11,998,142
60	2018.06.22.	미상	2,524,210	128	2020.02.21.	미상	4,130,341
61	2018.06.22.	미상	3,795,645	129	2020.02.24.	미상	77,581,924
62	2018.06.29.	미상	10,084,549	130	2020.02.25.	미상	96,444,000
63	2018.07.03.	미상	15,332,307	131	2020.03.31.	미상	8,668,717
64	2018.07.06.	미상	4,373,245	132	2020.04.03.	미상	1,418,512
65	2018.07.20.	미상	1,964,815	133	2020.05.12.	미상	1,362,878
66	2018.07.31.	미상	3,269,166	134	2020.06.16.	미상	2,054,864
67	2018.08.21.	미상	5,048,203	135	2020.06.30.	미상	2,641,459
68	2018.08.24.	미상	3,987,574	136	2020.07.14.	미상	2,538,360
	합 계						1,708,767,185

<법인세 환급금>

(단위 : 원)

연번	회계연도	구분		법인세 횐	급내역		
한 번 	의계 건도	十七	납부회계연도	납부액	환급일	환급액	
	2017	법인세	2016	88,423,550	2017.06.23.	88,423,550	
1		지방소득세	2016	8,842,360	2017.08.07.	8,842,360	
		소계		97,265,910		97,265,910	
	2018	법인세	2017	86,282,560	2018.07.03.	86,282,560	
2		2018	지방소득세	2017	8,628,260	2018.09.11.	8,628,260
		소계		94,910,820		94,910,820	
		법인세	2018	99,021,510	2019.06.24.	99,021,510	
3	2019	지방소득세	2018	9,902,160	2019.08.05.	9,902,160	
		소계		108,923,670		108,923,670	
4	2020	법인세	2019	94,370,330	2020.06.24.	94,370,330	
합 계				395,470,730		395,470,73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8	교직원 신협기금 등 교비회계 편입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학교법인의	ㅇ기관주	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통보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도록		기금을 1계에서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기 바람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2]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예수금'은 특별		
	회계로부터 예수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는 2017회계연도에 교비회계에 속하지 않는		
	신협(교원) 기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관리(조합원		
	대출 등)하고, 결산 시 예치금 1,312,711천원을 교비회계		
	'특별예수금'으로 계상하는 등【붙임】"교직원 신협기금		
	등 교비회계 편입 현황"과 같이 201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교비회계에 속하지 않는 4개 기금		
	('19 결산기준 2,535,753천원)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결산 시 '특별예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		

교직원 신협기금 등 교비회계 편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회계	구분	조합원	자금	현황 	대출	·현황(기]말기준)	수입 및 >	기출 현황
연도	丁正	(회원)	기초	기말	총 금액	인원	1인당 금액	수입	지출
	신협	교원	1,379,944	1,312,711	833,092	27	4,130 ~ 50,000	778,244	845,477
	(2) 百	직원	1,587,151	1,711,685	609,551	27	3,400 ~ 45,000	795,904	671,370
2017	상조회	교원	150,545	151,682				64,071	62,934
		직원	54,983	59,529				30,546	26,000
	소 계		3,172,623	3,235,607	1,442,643	54		1,668,765	1,605,781
	신협	교원	1,312,711	1,010,816	1,256,948	36	353~50,000	924,523	1,226,418
		직원	1,711,685	1,504,285	673,256	27	1,960~50,000	796,659	1,004,059
2018	상조회	교원	151,682	144,690				63,308	70,300
	18 J. H	직원	59,529	57,426				30,687	32,790
	소	계	3,235,607	2,717,217	1,930,204	63		1,815,177	2,333,567
	신협	교원	1,010,816	766,721	1,447,506	41	2,500~50,000	800,052	1,044,147
	(2) 省	직원	1,504,285	1,566,478	488,950	23	520~50,000	779,618	717,425
2019	사ス히	교원	144,690	133,724				63,444	74,410
	상조회	직원	57,426	68,830				29,104	17,700
	소	계	2,717,217	2,535,753	1,936,456	64		1,672,218	1,853,682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9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ㅇ기관경]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ㅇ통보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 동문호	관 운영권
	되어 있고,「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43조에		대해 교육부 · 득하거나,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동문회	관을 교육용
	하며,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고,	으로 바람	사용하기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는 2003.9.18. 교육부 허가 없이 교내에		
	위치한 교육용기본재산인 동문회관(지상 11층, 지하 1층,		
	연면적 8,461 m²) 1 ~ 4층(면적합계 3,020 m²)에 대한 운영권		
	(제3자 전대 및 임대료 징수권한 포함)을 '계약일로부터		
	동문회가 동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동문회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서강대학교 동문회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2007.1.1.		
	11층(395㎡)을 포함하는 변경계약 체결)함으로써, 계약일		
	이후부터 2019.7.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부 허가 없이		
	교육용기본재산인 위 1~4층 및 11층에 대한 운영권을		
	기한을 알 수 없이 동문회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건물 공사비 10,455,400천원 중 동문회에서 4,000,000천원 부담		

【참고】

동문회관 1~4층 및 11층 임대 현황 (2020.7.23.현재)

(단위 : m², 천원)

위치	입주업체명	임대 면적	임대기간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비고
1층	-	574	2007.10.1. ~ 2027.9.30.	2,000,000	8,580	3,050	
18	-	132	2020.1.1. ~ 2020.12.31.	100,000	3,570	960	
2층	-	739					세부임대현황 참조
3층	-	685	2020.2.1.~2021.1.31.	548,000	13,700	5,480	
	-	341	2020.3.1.~2021.2.28.	150,000	4,120	2,060	
4층	-	199					
	-	202	2020.1.1.~2020.12.31.		1,200	600	카페
11층	-	395	2018.12.1.~2020.12.31.	30,000	3,570	2,380	사무실

※ 2층 세부 임대현황

업체	호실	보증금	월임대료	월관리비	임대기간
-	201호	5,000	480	320	2019.6.1. ~ 2021.5.31.
_	204호	5,000	510	340	2019.6.1. ~ 2021.5.31.
_	205호	5,000	810	540	$2019.6.1. \sim 2021.5.31.$
_	206호	_	_	_	2018.11.1.~2021.1.31.
_	207호				
_	208호	5,000	660	440	2019.6.1. ~ 2021.5.31.
	209호	_	960	640	2019.9.1. ~ 2021.5.31.
_	210호		1,710	1 1 40	2019.5.13. ~2021.5.31.
	211호	_	1,710	1,140	2019.5.15. ~ 2021.5.51.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	일반경쟁 입찰대상 용역 수의계약 체결	
	일반경쟁 입찰대상 용역 수외계약 체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는 2017. 6. 7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ㅈ해외세미나'(계약금액 85,177천원) 용역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등 【붙임】"일반경쟁 입찰대상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7. 6. 7.부터 2019. 10. 7.까지 위 'ㅈ 해외세미나' 등 일반경쟁 입찰대상용역 총 6건(계약금액 합계 329,177천원)을 입찰에 부치지	71 (Fp1)
	않고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음.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일	계약건명	계약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업체 (대표자)	비고 (담당자)
1	2017. 6. 7.	ㅈ 해외세미나	용역	17. 6. 27 ~ 7. 7	85,177	-	-
2	2017. 5. 12.	-	용역	17. 5. 12 ~ 7. 3	61,840	-	-
3	2018.5.25.	ㅈ 주제연구 해외연수 프로그램	용역	18. 6. 20 ~ 6.24	31,374	-	-
4	2018. 8. 27	-	용역	18 10 26 ~ 10.28	38,186	-	-
5	2019. 8. 28	-	용역	19. 10 25 ~ 10.27	76,290	-	-
6	2019. 10. 7	-	용역	19. 11. 6 ~ 11.8	36,310	-	-
		합계	329,177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1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 「서강대학교 직원 보수 규정」제4조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ㅇ 경고(3명)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자녀의 경우 20세 이상이라도 대학 재학 중(휴학기간 제외)인	○ 시정(회수)
	경우에는 기본 학제 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합계
	- 서강대학교 X는 자녀가 2017. 2. 대학을 졸업하여 가족	1,560천원을 당사자
	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 신고를	글도부터 외수하여
	하지 않은 채 2017. 3.부터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기 바람
	가족수당 합계 800천원(40개월, 월2만원)을 지급받는 등	
	【붙임】"가족수당 부적정 수령 현황"과 같이 2017. 3.	
	부터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X 등 교직원 3명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 등의 사유로 가족수당 수령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족수당 합계 1,56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붙임1】

가족수당 부적정 수령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소속	직급	해당가족 성명			부적정 지급내역					비고
- 한번	3.T	역함	7878	관계	생년월일	개시월	종료월	지급월	월지급액	지급금액	n).rc
1	-	-	Х	자	1996.1.12.	2017.3.	2020.6.	40	20	800	대학 졸업 (*17.2.)
2	-	-	-	자	1994.4.4.	2017.9.	2020.6.	34	20	680	대학 졸업 (*17.8.)
3	-	-	-	자	1995.1.9.	2020.3.	2020.6.	4	20	80	수료 상태 ('20.2.)
	합계 1,56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2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0	기관	경고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0	통보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	. —	- 근무수당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기준(/	대한 구체적 사후 근무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확인 방법 마련하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바람	1 6 -17 1
	※「서강대학교 직원 보수규정」제4조에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I		
	- 서강대학교는 2017. 3. 이전 미상일부터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시간외 근무자의 실 근무시간 확인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간외 근무 사전 신청에 대한 승인분을			
	근거로 직원 157명에게 2017학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115,287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시간외 근무 인정			
	시간 현황"과 같이 2017. 3. 이전 미상일부터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시간외 근무를 신청한 직원의 실 근무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 수당 합계 277,751천원			
	(2017학년도~2020학년도 7월 현재)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현황

-7 h	1	이 이 소 (편)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구분	Ė	인원수(명)	사전 신청시간(시간)	인정시간(시간)	지급액(천원)
	3월	90	2,237	2,237	13,757
	4월	78	3,262	3,262	21,145
	5월	65	1,115	1,115.5	7,129
	6월	62	770	770.5	4,920
	7월	58	955	955	6,068
	8월	69	1,255	1,255.5	7,895
201531115	9월	66	1,400	1,400.5	8,824,
2017학년도	10월	67	782	782	4,945
	11월	79	1,197	1,197	7,461
	12월	75	1,387	1,387.5	8,760
	1월	72	2,159	2,159.5	13,557
	2월	78	1,739	1,739	10,825
		154		·	·
	계	(연간 시간외수당 수령 인원수)	18,261	18,261	115,287
	3월	85	1,488	1,488.00	9,387
	4월	72	836	836.50	5,301
	5월	64	730	730.50	4,616
	6월	60	517	517.50	3,331
	7월	47	535	535.50	3,431
	8월	58	761	761.50	4,691
2018학년도	9월	61	707	707.00	4,466
2010학단도	10월	50	458	458.50	2,894
	11월	56	515	515.00	3,200
	12월	65	773	773.50	4,834
	1월	55	1,260	1,260.00	7,764
	2월	67	1,183	1,183.50	7,312
	계	151 (연간 시간외수당 수령 인원수)	9,767	9,767	61,229
	3월	72	1,190	1,190.50	7,381
	4월	50	540	540.00	3,393
	5월	57	546	546.50	3,436
	6월	49	438	438.00	2,847
	- 7월	45	518	518.00	3,240
	8월	64	912	912.00	5,745
20103111	9월	68	644	644.00	3,968
2019학년도	10월	53	485	485.50	3,089
	11월	42	405	405.00	2,578
	 12월	62	642	642.50	4,021
	 1월	63	884	884.00	5,466
	2월	67	1,168	1,168.00	7,287
	계	149 (연간 시간외수당 수령 인원수)	8,374	8,374	52,454
	3월	62	663	663	19,766
	 4월	43	227	227	7,342
2020학년도	5월	43	292	292	11,040
3월~6월	6월	53	311	311	10,641
	계	91 (연간 시간외수당 수령 인원수)	1,494	1,494	48,781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3	행정서비스 연구장려금 지급 부적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ㅇ 경고(2명)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제49조에 따르면 대학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ㅇ 시정(회수)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	- 규정에 없이 지급한 행정서비스 연구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각종 수당	장려금 합계
	지급은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33,500천 원(′18. 4. 이후 지급액)을 당시자
	따라 업무처리하고, 부적정 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하여 교비히게에
	지급액 회수 및 관련자 처분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규정에	세입조치하기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 '18. 3. 8.)하였는데도,	바람
	- 서강대학교는 2017. 6. 22. ㅊ학부 Y에게 규정에 없는	
	행정서비스 연구장려금(전 학년도 보직교수에게 지급)을 ㅊ학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2017. 5. 22.)만으로 연 2,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행정서비스 연구장려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17.3.부터 2020.7. 감사일 현재까지 위 Y 등	
	교원 12명에게 ㅊ학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총장	
	결재만으로 규정에 없는 행정서비스 연구장려금 합계	
	48,7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행정서비스 연구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성명	소속	직위 (급)	지급일	전년도직위	총지급액	′18.4. 이후 지급액	비고
				2017.6.22.	ㅊ학부 학과장	2,000		
1	Y	ㅊ학부	교수	2018.5.11.	ㅊ학부 학과장	4,000	6,000	
				2019.5.10.	ㅊ학부 학과장	2,000		
2	-	ㅊ 학부	교수	2017.6.22.	ㅊ학부 학장	1,000	-	
3	-	ㅊ학부	교수	2019.5.10.	-	4,500	4,500	
4	-	ㅊ학부	교수	2017.6.22.	-	1,000	-	
_		_ = 1	_ ,	2017.6.22.	-	1,500	•	
5	_	ㅊ학부	교수	2018.5.11.	-	3,000	3,000	
6	-	초대학원	교수	2017.6.22.	-	3,000	-	
7	-	호학부	교수	2018.5.11.	대학원 ㅊ학과 주임	2,000	2,000	
8	-	ㅊ학부	교수	2017.6.22.	-	2,000	-	
				2017.6.22.	초대학원	700		
9	_	ㅊ학부	교수	2018.5.11.	ㅊ대학원 부원장	3,000	6,000	
				2019.5.10.	ㅊ대학원 부원장	3,000		
				2017.6.22.	-	3,000		
10	-	ㅊ학부	교수	2018.5.11.	-	2,500	8,000	
				2019.5.10.	-	5,500		
11	-	초학부	교수	2019.5.10.	대학원 ㅊ학과 주임	2,000	2,000	
10		_ =1 14	- 2	2017.6.22.	초대학원	1,000	• 000	
12	-	ㅊ학부	교수	2019.5.10.	·	2,000	2,000	
			48,700	33,500				

* 2017년, 2018년: ㅊ학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2019년: ㅊ학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총장결재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4	전공필수 과목 대체 부적정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ㅇ기관경고
	제5호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는 학교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며, 「서강대학교	
	학칙」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통보 - 전공필수 과목의
	학칙시행 세칙의 변경 등을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 인정에 대하여
	교학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서강대학교 학칙 시행	자체규정을 마련 하여 운영하기 바람
	세칙('14.12.11.)」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중핵과목 및 전공	
	필수과목은 수업시간표에 지정된 학년, 학기에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졸업이 늦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는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전공필수 과목의	
	대체 인정에 대한 학칙 등 자체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2017학년도 1학기 Z(학번 ********) 학생의 과목대체 신청에	
	대하여 '학부생 과목 대체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안내"	
	(교무처장 전결)에 따라 학장 승인을 받은 서류를 접수하여	
	별도의 조치없이 해당학기에 개설되지 아니한 전공필수	
	과목인 '철학개론'을 대신하여 '현대미국철학'과목으로	
	대체 인정하는 등 【붙임】 "전공필수 과목 대체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전공	
	필수 과목의 대체 인정에 대하여 학칙 등 자체규정을 마련	
	하지 않고, 위 Z 등 학생 333명의 과목대체 신청에 대	
	하여 학(과)장 승인을 받은 서류를 접수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적게는 1과목(1학점)에서 많게는 4과목(12학점)까지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총 422건(167개 과목) 합계 1,255학점을 대체 인정한 사실이	
	있음.	
	* 학생개별사안발생 → 과목대체신청서 수령 → 학과장 면담 및 승인	
	→ 행정팀 제출 → 학사지원팀으로 과목대체 사항 송부(전자문서)	
	※ 2019.10.28. 이전은 학과장, 학장 승인	

전공필수 과목 대체 현황

æ						요청 과목		대체 과목		전급	공필수학점	현황
연 번	학년도	박년도 학기 학번		성명	전공필수 과목명	학점	미수강사유	전공선택 과목명	학점	이수 기준	실제 이수	부족학점 현황
1	2017	1	******	Z	철학개론	3	개설학기놓침	현대미국철학	3	9	6	3
2	2017	1	-	-	철학개론	3	개설학기 놓침	서양철학사	3	9	6	3
3	2017	1	-	-	경제학특강3	3	과목코드변경	경제성장론	3	18	15	3
4	2017	1	-	-	전공일반	3	학생개인사유 (교육과정오인지, 유사과목기이수 등)	기초독어	3	33	30	3
5	2017	1	-	-	전공기초	3	학생개인사유 (교육과정오인지, 유사과목기이수 등)	그림속의중국	3	15	12	3
	중략											
416	2019	2	-	-	이론과사회	3	과목미개설/ 안식년,정년	교육사회학	3	18	15	3
417	2019	1	-	-	전공실용	3	학생개인사유 (교육과정오인지, 유사과목기이수 등)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3	12	9	3
418	2020	1	-	-	국어학연구방법론	3	과목미개설	국어형태론	3			
419	2020	1	-	-	국어학자료연구	3	과목미개설	언어와컴퓨터	3	9	3	6
420	2019	1	-	-	국제개발협력개론	3	과목미개설	국제개발협력의이해	3	9	6	3
421	2020	1	-	-	불어일반 영역	3	과목미개설	현대프랑스소설1	3	9	6	3
422	2020	1	-	-	언어와광고	3	학생개인사유 (교육과정오인지, 유사과목기이수 등)	언어와인지	3	12	9	3
								합계		5,307	4,055	1,255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5	조기취업자 성적 부여 부적정	
	○「서강대학교 학칙('17.2.14.)」제54조에 따르면 학생은 수강	○ 경고(19명)
	신청한 전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	
	일수가 소정의 한계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고, 「서강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5조	통보부적정하게 성적을
	제2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매 과목당 결석 허용 횟수는	- 무극/8이/11/8/극물 부여받은 AB 등
	한 학기를 통산하여 주당 수업시간수의 두 배까지이며,	
	한 학기에 주당 3시간 과목은 6시간, 주당 2시간 과목은	대하여 타 수강
	4시간까지 결석이 허용되고 3회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으로 환산되고,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의 결석 허용한계는	고려하여 학칙 등에 따라 조치
	위 한계의 두배이며, 졸업예정 학기에 조기 취업 및 입사	- ' ' '
	시험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석 허용한계 초과시 학생이	
	취업확인서(지정 서식)를 해당 기업(또는 기관)의 확인을	
	받아 학사지원팀에 제출할 경우 담당교수 재량에 의하여	
	해당 근무기간을 출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담당교수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할만한 수업	
	과제나 시험을 통하여 평가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성적을	
	부여하되 성적은 B ⁺ 이하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AA는 2017. 5. 10. '♡♡'이라는 회사에 취업한	
	ㅋ전공 AB(학번 *******) 학생이 위 '♡♡'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취업확인서에 대하여 조기취업으로 인정하고 기말	
	고사를 과제물로 대체한 후 2017학년도 1학기 '도가철학'	
	과목의 성적을 A ⁺ 로 부여하는 등 【붙임】 "조기취업자 성적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 위 AA 등 교원 19명은 위 AB 등 조기취업자	
	21명이 제출한 취업확인서에 대하여 조기취업으로 인정	
	하고 총 19과목(중복포함)의 성적을 A ⁻ 부터 A ⁺ 까지 부여한	
	사실이 있음.	

조기취업자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

	개설	-1 17 -4	迅	·수	-1 -1	11 71		학생			취업현황		7 61 31 71 61	학사일정	취업확인서	결석	기말고사
연번	학기	과목명	학과	성몀	학점	성적	전공	학번	성명	회사명	입사일	종료일	졸업예정일	(기말고사)	인정여부	처리	시험응시 여부
1	2017-1	도가철학	-	AA	3	A+	77	******	AB	00	2017.05.10		2017-08-17	2017.6.15~21,	인정	미처리	대체(과제물등)
2	2017-1	디스플레이물리	-	-	3	A-	-	-	-	-	2017.05.08		2017-08-17	2017.6.15~21,	인정	미처리	대체(과제물등)
3	2017-1	정보사회의이해	-	-	3	A+	-	-	-	-	2017.02.01	2017.04.30	2017-08-17	2017.6.15~21,	인정	미처리	응시
4	2017-1	스토리개발 및 플롯구성 (캡스톤디자인)	-	-	3	A-	-	-	-	-	2017.02.01	2017.04.30	2017-08-17	2017.6.15~21,	인정	미처리	응시
5	2018-1	요가	-	-	1	A0	-	-	-	-	2018.04.10		2018-08-21	2018.6.15~21,	인정	미처리	대체(과제물등)
	중략																
22	2019-2	한중정치사회의 이해(중국어)	-	-	3	A-	-	-	-	-	2019.10.02	2020.01.20	2020-02-18	2019.12.16~21,	인정	미처리	응시
23	2019-2	한국사회변동	-	-	3	A+	-	-	-	-	2019.10.02	2020.01.20	2020-02-18	2019.12.16~21,	인정	처리	응시
24	2019-2	남북한관계론	-	-	3	A+	-	-	-	-	2019.10.02	2020.01.20	2020-02-18	2019.12.16~21,	인정	미처리	응시
25	2020-1	삶과죽음	-	-	3	A-	-	-	-	-	2020.03.06		2020-08-18	2020.6.15~20	인정	미처리	대체(과제물등)
26	2020-1	결혼준비특강	-	-	3	A0	-	-	-	-	2020.03.06		2020-08-18	2020.6.15~20,	인정	미처리	대체(과제물등)
27	2020-1	가상현실콘텐츠 기획제작	-	-	3	A+	-	-	-	-	2020.03.09	2020.06.08	2020-08-18	2020.6.15~20,	인정	미처리	응시
28	2020-1	금융시장행태주의 (behavioral)분석 (캡스톤)	-	-	3	A0	-	-	-	-	2020.04.20		2020-08-18	2020.6.15~20,	인정	미처리	대체(과제물등)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6	창업 휴학 승인 부적정					
	○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 경고(2명)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서강대학교 학칙 시행					
	세칙('14. 12. 11.)」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창업휴학은 기술	ㅇ톳보				
	창업 및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에 한하며, 금융, 부동산,	- 창업교육 학사제도				
	숙박, 음식, 서비스 업종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취업창업교육	창업친화적 학사 제도 운영의 취지에				
	지원과-1216, '14.3.25.)에 따르면 대학은 '창업교육 학사제도	맞게 규정을 마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창업휴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하여 운영하기 바람				
	승인에 대한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트전공 교수 AC는 트전공 AD 학생(학번					
	********)이 2018. 4. 27. '개인과외(수학)'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9.21. 신청한 2018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에 대하여					
	창업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하여 소견서를 작성하여 허용					
	하는 등 【붙임】 '창업휴학 승인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AD 학생이					
	신청한 창업휴학에 대하여 전공 관련성이 없거나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임에도 휴학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서강대학교 교무처는 위 창업휴학 2건에 대하여					
	전공 관련성이나 제외 업종에 대한 검토 없이 휴학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창업 휴학 승인 부적정 현황

연번	학기	학과(부)	학번	성 명	담당교수	전공관련 여부	창업일/ 휴학신청일	창업 회사명	업태	종목
1		77	******			×	2017.4.20./ 2017.9.12.	-	교육서비스업	보습학원 (보통교과목)
2	8	트전공	*******	AD	AC	×	2018.4.27./ 2018.9.21.		서비스	개인과외 (수학)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7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 「평생교육법」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 (평생학습정책과-1972, 2014.03.26.)」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 시설은 설치·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부설 게임&평생교육원은 2018학년도 2학기 '교 과정(강사: AE, AF)'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 하지 않는 등【붙임】"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교 과정' 등 합계 5개 과정을 신규개설 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

연번	학년도	강좌명	수강인원	교육기간	개설일자	강사명	비고
1	2018-2	77.	30	12. 16. ~ 12. 30.	일 9:00~20:00	AE AF	
2	2019-1	-	73	7. 15. ~ 7. 26. 8. 5. ~ 8. 16.	월수금 10:00~13:00 월수금 14:00~17:00	- -	
3		-	31	9. 21. ~ 12. 7.	토 10:00~17:00	- 외	
4	2019-2	-	12	10. 11. ~ 12. 13.	금 19:00~21:00	- 외	
5		-	6	10. 10. ~ 3. 19	목 17:30~19:30	- 외	'19~'20
	합계	5 건	152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8	성적산출자료 관리 부적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ㅇ기관경	고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면「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	ㅇ통보	
	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 관련법령	에 맞게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성적산출 방안을	·물 보존 마련하여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2016.3. 교육부에서는 사립		
	대학에 '성적산출관련 등 기록물 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2015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15		
	국가기록원)를 참고하도록 하고, 동 가이드에서는 시험관리		
	문서의 경우 '성적처리와 관련된 기록으로 향후 업무		
	참고상 10년 보존'으로 되어 있으며, 서강대학교 「문서		
	규정」<별표 1> 문서보존기간 책정표에 따르면 '교무		
	학사행정 일반문서'의 경우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는 2017학년도 2학기 '회계학원론(담당 AG)'		
	교과목의 중간 및 기말시험 답안지 등 성적산출 관련		
	기록물을 2020.7. 감사일 현재까지 보존하지 않는 등		
	【붙임】 "성적산출자료 미보존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19학년도까지 위 회계학원론 등 총 3,089		
	과목(학부 2,989, 대학원 100)의 과제물, 답안지 등의 성적		
	산출관련 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성적산출자료 미보존 현황

연	연도	과목명	학과	담당	 미보관 내역	비고
번	亡上	770	(소속)	교원	기포진 에너	71.25
[학	부】					
1	2017-2학기	회계학원론	경영학전공	AG	중간시험 답안지 미보관, 기말시험 답안지 미보관	중간, 기말 성적집계자료 파일 보관
2	2017-2학기	중급회계1	경영학전공	AG	중간시험 답안지 미보관, 기말시험 답안지 미보관	중간, 기말 성적집계자료 파일 보관
3	2017-2학기	기업과국제환경	경영학전공	-	중간시험 답안지 미보관, 기말시험 답안지 미보관	
4	2017-2학기	외환론	경영학전공	-	중간시험 답안지 미보관, 기말시험 답안지 미보관	
5	2017-2학기	생산관리론	경영학전공	-	과제물+중간시험 답안지 미보관, 과제물+기말시험 답안지 미보관	중간, 기말 성적집계자료 파일 보관
6	2017-2학기	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	경영학전공	-	과제물+중간시험 답안지 미보관, 과제물+기말시험 답안지 미보관	중간, 기말 성적집계자료 파일 보관
7	2017-2학기	회계학원론	경영학전공	-	중간시험 답안지 미보관, 기말시험 답안지 미보관	중간, 기말 성적집계자료 파일 보관
8	2017-2학기	경영통계학	경영학전공	-	과제물+중간시험 답안지 미보관, 과제물+기말시험 답안지 미보관	
9	2017-2학기	경영환경에서의시계열 자료분석과예측 (캡스톤디자인)	경영학전공	-	중간 과제물 미보관, 기말 과제물 미보관	중간, 기말 성적집계자료 파일 보관
10	2017-2학기	관리회계	경영학전공	-	중간시험 답안지 미보관, 기말시험 답안지 미보관	중간, 기말 성적집계자료 파일 보관
11	2017-2학기	원가회계	경영학전공	-	중간시험 답안지 미보관, 기말시험 답안지 미보관	중간, 기말 성적집계자료 파일 보관
12	2017-2학기	경영전략	경영전문대학원	-	중간시험 답안지 실물 보관, 과제물+기말시험 답안지 미보관	중간시험 답안지 실물보관, 기말 성적집계자료 파일 보관
				중릭	‡	
88	2019-2학기	금융경제학세미나	경제학과	-	과제물 미보관	
89	2019-2학기	고전문학연구방법론	국어국문학과	-	과제물 미보관	
90	2019-2학기	Wearable & Fashion Media	아트& 테크놀로지학과	-	과제물 미보관	
91	2019-2학기	디지털 영상처리의 기초	아트& 테크놀로지학과	-	과제물 미보관	
92	2019-2학기	영상처리특강 Ⅲ	아트& 테크놀로지학과	-	과제물 미보관	
93	2019-2학기	통사론I	영어영문학과	-	과제물 미보관	성적집계자료 파일 보관
94	2019-2학기	방사선검출및측정	전자공학과	-	과제물 미보관	성적집계자료파일보관
95	2019-2학기	음성신호처리론	전자공학과	-	기말 답안지 미보관	성적집계자료 파일 보관
96	2019-2학기	공간 데이터 관리 및 응용	컴퓨터공학과	-	과제물 미보관	
97	2019-2학기	멀티미디어시스템특론	컴퓨터공학과	-	과제물 미보관	
98	2019-2학기	고급에너지및운동량전달	화공생명공학과	-	기말 답안지 미보관	
99	2019-2학기	화공생명공학특론Ⅱ	화공생명공학과	-	과제물 미보관	
100	2019-2학기	단백질화학	화학과	-	과제물 미보관	
	소계	대학원 총 100건				
	총계	3,089건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9	수업계획서 홈페이지 미게시	
	○ 서강대학교「수업운영에 관한 규정(2018.11.12.)」제8조에	ㅇ기관경고
	따르면 교과목 담당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은 1차 수강	
	신청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	
	계획서를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ㅎ전공 AH는 2017학년도 2학기 '기기분석'	
	교과목 수업계획서를 입력마감일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입력하지 않는 등 【붙임】'수업계획서 미게시 현황'과 같이	
	위 AH 등 교원 11명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총 14개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수업계획서 미게시 현황

순 번	학기	성명	학부(과)	직급	과목명	비고
1	2017.2	АН	화학	강사	기기분석	
2	2018.1	-	전인교육원 (교양체육)	강사	골프	
3	2018.2	ı	스포츠미디어 연계전공	강사	필드골프I	
4		ı	스포츠프로모션	강사	스포츠프로모션	
5		-	화학	교수	무기화학	
6		-	화학	대우교수	일반화학실험	2분반
7		-	화학	대우교수	일반화학실험	모두 미업로드
8		-	전인교육원 (교양체육)	강사	골프	
9	2019.1	-	화학	교수	고급무기화학	수강생 상대 개별안내
10		-	융합의생명공학과 협동과정	겸임교수	화학(물리,생명과학)특허와기술이전	
11		-	아트&테크놀로지	강사	Modern & Contemporary Art	
12		-	커뮤니케이션학 전공	강사	고급영화제작	
13	2020.1	-	전인교육원 (교양일반)	대우교수	법과지식산업	
14		-	전인교육원 (교양일반)	강사	한국과세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0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0조,	○ 기관주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전임교원 424명 중 211명은 성평등상담실	
	에서 2017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을 현장교육으로 8차례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붙임】	
	"교직원 및 학생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교육대상인 대학소속	
	교원 1,556명(46.2%*), 직원 64명(8.2%), 학생 21,980명	
	(63.9%)은(중복포함) 성평등상담실에서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미이수율	

교직원 및 학생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

□ 교원

연도	교육 대 (전체 3		교육 이수자	교육 미이수자	교육 실시 횟수	미이수율
	전임교원	424명	213명	211명	8회	49.80%
2017	비전임교원 및 강시(비상근)	771명	255명	516명	8회	66.90%
	소계	1,195명	468명	727명	8회	60.80%
	전임교원	353명	193명	160명	7회	44.90%
2018	비전임교원 및 강시(비상근)	790명	328명	462명	7회	58.50%
,	소계	1,143명	521명	622명	7회	56.70%
	전임교원	413명	290명	123명	7회	29.80%
2019	비전임교원 및 강시(비상근)	617명	533명	84명	7회	13.60%
	소계	1,030명	823명	207명	7회	20.10%
총계	3,368명		1,812명	1,556명	22회	46.20%

□ 직원

연도	교육 대상자 (전체 직원)	교육 이수자	교육 미이수자	교육 실시 횟수	미이수율
2017	257명	229명	28명	4회	10.90%
2018	262명	232명	30명	4회	11.50%
2019	257명	251명	6명	4회	2.30%
총계	776명	712명	64명	12회	8.20%

□ 학생

연도	교육 대상자 (전체 학생)	교육 이수자	교육 미이수자	교육 실시 횟수	미이수율
2017	11,610명	4,515명	7,095명	29회	61.10%
2018	11,103명	3,475명	7,633명	27회	68.70%
2019	11,662명	4,410명	7,252명	27회	62.20%
총계	34,375명	12,395명	21,980명	83회	63.90%

^{※ &#}x27;17∼'19 4대폭력 예방교육은 현장교육으로 실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1	ㄲ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부적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경고(2명)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의(2명)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학과	○통보						
	운영요령(2019.1.1. 이전)」 제4조 제2항, 「계약학과 설치·운영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게						
	규정(2019.1.1. 이후)」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대학과 산업체	계약학과를 운영						
	등과 거리가 100km이내(통학에 소요되는 실제 도로거리 기준,	하기 바람						
	2019.1.1.이후 직선거리 50km이내)의 산업체인 경우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서강대학교가 🗘 🗘 🗘 육육과 각 체결한 「서강대학교 🎞							
	대학원 뜨전공 교육과정 협약서, 제1조에 따르면 '본 계약에서							
	산업체 범위는 대학원 위치에서 100 킬로미터* 내의 권역							
	으로 한정한다'라고 기재하여 협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 2019.1.1.이후 체결된 협약서(&&)에는 50km(직선거리)로 기재							
	- 서강대학교 ㄲ대학원은 대학(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과							
	거리가 100km를 초과하는 🗘 🗘 본사 해외사업처(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대학과 도로거리 164.9km[포털 지도 기준]) 직원 AI를							
	2019학년도 전기 ㄸ전공(계약학과)에 입학 허가하는 등							
	【붙임】 "거리초과 산업체 직원 계약학과 입학허가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과 통학에 소요되는							
	실제 도로거리가 100km(2019. 1. 1. 이후 직선거리 50km)를							

연번				사				분
	초과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없는	위 AI	등 4명에	대하여	
	계약학과	입학을	허가힌	: 사실이	있음.			

【붙임】

거리초과 산업체 직원 계약학과 입학허가 현황

연번	학년도-학기	학과		계약치	체결				지원자		
선빈	악년도-악기	약과	산업체명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범위	성명	근무처	거리	거리기준	등록여부
1	2019-전기	711학과					AI	본사 해외사업처	(도로) 164.9km	(도로) 100km	0
2	2019-전기	ㄲ학과	φφ	2017.11.24.	2018.3.1. ~2021.2.28.	100km 내 권역	-	본사 기획조정실	(도로) 164.9km	(도로) 100km	0
3	2020-전기	ㄲ학과					-	본사 감사실	(도로) 164.9km (직선) 142.5km	(도로) 100km (직선) 50km	0
4	2020-전기	ㄲ학과	\$ \$	2017.11.24. (변경협약 2020.2.17.)	2018.3.1. ~2021.2.28. (변경협약 2020.3.1. ~2023.2.28	50km (작선거리)내 권역	-	본사 기획예산처	(직선) 142.5km	(직선) 50km	0

[※] 기대학원 기학과(계약학과) 입학 현황 : ('19 전기) 6명 / ('20 전기) 8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2	시간강사 주당 수업 담당시간 초과 배정	
	○ 구「서강대학교 시간강사 규정」(2008.6.4.~2019.6.19.) 제8조에	ㅇ 기관주의
	따르면 시간강사의 담당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학과장은	
	강사의 위촉을 추천할 때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 학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도,	
	- 서강대학교는 2017.3.1. AJ를 2017.1학기 영문학작문 등	
	3개 과목 시간강사로 위촉하면서 학장의 승낙 없이 주당	
	9시간을 담당하게 하는 등 【붙임】 "시간강사 수업 담당	
	시간 초과 운영 현황"과 같이 2017.1학기부터 2019.1학기	
	까지 학장의 승낙 없이 위 AJ 등 시간강사 총 14명	
	(연간누적)으로 하여금 주당 최대수업시수 대비 적게는	
	0.4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총 30.4시간을 초과하여	
	수업을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시간강사 주당 수업 담당시간 초과 운영 현황

학년도	학기	연 번	위촉대학	성명	담당과목	시수	위촉일	해촉일	시수 합계	초과 시수
2017	1				영문학작문	3				
		1	국제인문학부	AJ	문학과영성	3	2017.03.01	2017.08.31	9	3
					초기 및 19세기 미국문학 프로세미나	3				
					동양철학개론	3				
		2	전인교육원	-	철학산책	3	2017.03.01	2017.08.31	6.4	0.4
					동서고전세미나	0.4				
					영미드라마의 이해	2				
		3	교육대학원	_ [글로벌의사소통I	3	2017.03.01	2017.08.31	8	2
					글로벌의사소통I	3				
					2017학년도 1학기 소계(3명)		1			5.4
2017	2				바올로서간연구	3				
		4	전인교육원	_	신학적인간학	3	2017.09.01	2018.02.28	9	3
					성서와생활	3				
					경제학개론	2				
		5	전인교육원	_	경제와사회	3	2017.09.01	2018.02.28	7	1
			CC 1-C		거시경제학	2		2010:0220	,	
					<u></u> 현대대수학 I	2				
		6	자연과학부	<u>-</u>	정수론	3	2017.09.01	2018.02.28	8	2
		0	시한다하다	-		3	2017.09.01	2010.02.20	0	4
					면적단위II 문학예술과창의적글쓰기	3				-
		_	그레이모칭.ㅂ			_	2017.00.01	2010.00.20	_	
		7	국제인문학부	-	치유서시창작론	3	2017.09.01	2018.02.28	9	3
					유럽예술감상	3				-
2018	1				2017학년도 2학기 소계(4명)			T		9
2018	1		-1+1 0 61		성서희랍어 1					
		8	전인교육원	-	공관복음서연구: 마르코	3	2018.03.01	2018.08.31	9	3
					신학적인간학 3					
					미분기하학	2				
		9	전인교육원	-	미적분학I	3	2018.03.01	2018.08.31	8	2
					미적분학I	3				
					독어조어론연구	3				
		10	국제인문학부	-	독일어권문화탐방	3	2018.03.01	2018.08.31	9	3
					독일언어와문화I	3				
					영미문화와 영어교육	2				
		11	국제인문학부	AJ	현대서양문학	3	2018.03.01	2018.08.31	8	2
					문학과영성	3				
					2018학년도 1학기 소계(4명)					10
2018	2				현대대수학 I	2				
		12	전인교육원	- [미적분학II	3	2018.09.01	2019.02.28	8	2
					미적분학II	3				
					2018학년도 2학기 소계(1명)					2
2019	1				중국사회론	2				
		13	전인교육원	_	중국학입문	3	2019.03.01	2019.08.31	8	2
			. –		한중정치사회의이해(중국어)	3	1			
					현대대수학Ⅱ	2				
		14	전인교육원	_	선형대수학	3	2019.03.01	2019.08.31	8	2
			نه است			3				-
					2019학년도 1학기 소계(2명)					4
					합계					30.4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3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수령 등	
	○「사립학교법」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국가공무원법」	<① 관련>
	제56조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 경고(19명)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고등교육법」제15조,	(=: 0)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4조에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고,	ㅇ시정(회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 강의료 675,000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원을 관련자들로부터
	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제2조,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고등	하기 바람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② 관련>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서강대학교 수업	ㅇ기관경고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에는 교수 및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보강계획서'를 사전에	
	해당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강 시 출결시스템을	ㅇ 통보 츠서브레 버기이시기기
	통하여 반드시 출결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강대학교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하기 바람
	따르면 담당강의시간 수가 책임강의시간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강의시간 수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수령에 관한 사항】①	
	- 서강대학교 ㄹ전공 AK는 2017. 4. 28. 출장을 이유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17학년도 1학기에 담당한 '배' 교과목 수업을 휴강		
	(1.5시간)하고 휴강 당일 본인 부재 상태에서 조교가 전체		
	진행한 수업만으로 초과강의료 3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붙임1】"미보강 및 초과강의료 지급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AK		
	등 교원 19명은 합계 86.5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고		
	그 중 10명은 초과강의료 합계 675,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보강일시 출석부 반영에 관한 사항】②		
	- 서강대학교는 ㅁ전공 AL이 2017. 5. 11. 'ㅆ' 수업을 휴강		
	하고 2017. 5. 20. 보강을 하였음에도 실제 보강일시가		
	아닌 휴강일시(2017. 5. 11.)에 출석부 출결확인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붙임2】 "보강일시 출석부 미반영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위		
	AL 등 교원 247명의 보강 1,317건에 대하여 실제 보강일시가		
	아닌 휴강일시에 출석부 출결확인이 반영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붙임1】

미보강 및 초과강의료 지급 현황

(단위: 원)

연번	학과	직급	교수명	학년도 학기	교과목명	휴강일자 /시간	휴강사유	휴강한 수업현황	미보강 시수	단가	미공제 강의료													
				2017-1	нн	4.28. 6,7교시 (17:30~19:20)	출장 (일본 홋카이도) ※ '17.4.26~4.30.	휴강당일 교수가 직접 교육·지도하지 않고 조교가 진행	1	30,000	30,000													
								2017-1	нн	5.12. 6,7교시 (17:30~19:20)	출장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 '17.5.9~5.13.	휴강당일 교수가 직접 교육·지도하지 않고 조교가 진행	1	30,000	30,000									
1	르전 공	교수	AK	2019-1	нн	5.30. 4,5 교 시 (13:30~15:20)	출장 (국내) ※ '19.5.30.	휴강당일 교수가 직접 교육·지도하지 않고 조교가 진행	1	0	-													
				2019-1	ЯН	6.7. 4,5교시 (13:30~15:20)	출장 (키자흐스탄 알마티) ※ '19.6.4~6.8.	휴강당일 교수가 직접 교육·지도하지 않고 조교가 진행	1	0	-													
					소계						60,000													
	ㅎ전공	교수			2018-2	-	11.5. 5,6,7교시 (15:00~18:50)	출장 (중국 상하이) ※ '18.11.1~11.6.	휴강당일 교수가 직접 교육·지도하지 않고 조교가 진행	2	0	-												
2			수 - 	2019-1	-	6.10. 5,6,7교시 (15:00~18:50)	출장 (국내) ※ '19.6.10.	휴강당일 교수가 직접 교육·지도하지 않고 조교가 진행	2	0	-													
						소계			4		0													
		立수		2019-2	-	9.25. 4,5교시 (13:30~15:20)	출장 (국내) ※ '19.9.25.	휴강당일 교수가 직접 교육·지도하지 않고 조교가 진행	1	0	-													
3	르전 공		-	-	<u>-</u>	-	-	-	-	=	-	-	-	-	-	-	-	2019-2	-	12.13. 5,6,7교시 (15:00~18:30)	출장 (국내) ※ '19.12.12.~12.15.	휴강당일 교수가 직접 교육·지도하지 않고 조교가 진행	2	0
						소계			3		0													
	중략																							
18	므전공	교수	-	2019-1	朋	4.30. 6,7교시 (17:30~19:20)	출장 (국내) ※ '19.4.30.~5.1.	휴강당일 교수가 직접 교육·지도하지 않고 조교가 진행	1	30,000	30,000													
						소계			0		0													
19	ㅎ전공	교수	-	2019-2	-	10.11. 4,5교시	출장 (일본 효고) ※ '19.10.11.~10.13.	휴강당일 교수가 직접 교육·지도하지 않고 조교가 진행	1.5	30,000	45,000													
						소계	-		0		0													
	합계										675,000													

【붙임2】

보강일시 출석부 미반영 현황

연번	학기	학부(과)	작급	ॻ₹ॻ	강의명	ተያሉኒ	결강일시	결강 요일	보강일시	보강 요일	출석부빈영 일시 (결강일시와 동일)	보강계획서 보강일시 기재여부
1	2017- 1학기	ㅁ 전공	교수	AL	Ж	화,목 15:00~16:15	2017.05.11, 15:00~16:15	목	2017.05.20	톳	2017.05.11, 15:00~16:15	월일만 있음
2	2017- 1학기	-	교수	-	-	화,목 15:00~16:15	2017.3.9, 15:00~16:15	목	2017.4.18, 15:00~16:15	화	2017.3.9, 15:00~16:15	0
3	2017- 1학기	-	겸임 교수	-	-	화,목 10:30~11:45	2017.5.30, 10:30~11:45	화	2017.5.23, 18:00~19:30	화	2017.5.30, 10:30~11:45	0
4	2017- 1학기	-	부교 수	-	-	수,금 09:00~10:15	2017.4.28, 09:00~10:15	금	2017.5.24, 18:00~19:15	수	2017.4.28, 09:00~10:15	0
5	2017- 1학기	-	대우 교수	-	-	월 09:00~10:15 / 수 10:30~11:45	2017.5.24, 10:30~11:45	수	2017.5.30, 18:00~19:15	화	2017.5.24, 10:30~11:45	0
6	2017- 1학기	-	강사	-	-	화,목 09:00~10:15 화,목	2017.5.30, 09:00~10:15 2017.6.1,	화	2017.6.10, 10:00~11:15 2017.6.10,	토	2017.5.30, 09:00~10:15 2017.6.1,	0
7	2017- 1학기 2017-	-	강사 겸임	-	-	97,5 09:00~10:15 수,금	09:00~10:15 2017.3.24,	목	11:15~12:30	토	09:00~10:15 2017.3.24,	O 월일만
9	2017- 1학기 2017- 1학기	-	경임 교수 교수	-	-	09:00~10:15 화,목	09:00~10:15 2017.3.23,	금	2017.4.14	급	09:00~10:15 2017.3.23,	있음 O
10	2017- 1학기	-	교수	-	-	13:30~14:45 화,목 15:00~16:15	13:30~14:45 2017.3.18, 15:00~16:15	토	16:30~17:45 2017.4.11, 10:00~11:15	화	13:30~14:45 2017.3.18, 15:00~16:15	0
	중략					10100 10110	10.00		10.00 11.10		10.00 10.10	
1304	2019- 2학기	-	교수	-	-	월,수 10:30~11:45	2019.11.18, 10:30~11:45	월	2019.11.25	월	2019.11.18, 10:30~11:45	월일만 있음
1305	2019- 2학기	-	교수	-	-	월,수 10:30~11:45	2019.11.20, 10:30~11:45	수	2019.12.02	월	2019.11.20, 10:30~11:45	월일만 있음
1306	2019- 2학기	-	교수	-	-	금 16:30~19:15 화,목	2019.11.15, 16:30~19:15 2019.10.01,	금	2019.11.12	화	2019.11.15, 16:30~19:15 2019.10.01,	월일만 있음 월일만
1307	2019- 2학기 2019- 2학기	-	교수	-	-	12:00~13:15 화,목	12:00~13:15 2019.11.26,	화	2019.10.03	목 월	12:00~13:15 2019.11.26,	있음 월일만
1309	2학기 2019- 2학기	-	교수 교수	-	-	12:00~13:15 화,목	12:00~13:15 2019.11.28,	목	2019.11.23	월	12:00~13:15 2019.11.28,	있음 월일만
1310	2019- 2학기	-	교수	-	-	12:00~13:15 화,목 09:00~10:15	12:00~13:15 2019.10.17, 09:00~10:15	목	2019.09.21	토	12:00~13:15 2019.10.17, 09:00~10:15	있음 월일만 있음
1311	2019- 2학기	-	교수	-	-	화,목 09:00~10:15	2019.11.14, 09:00~10:15	목	2019.11.09	토	2019.11.14, 09:00~10:15	월일만 있음
1312	2019- 2학기	-	교수	-	-	화,목 13:30~14:45	2019.09.05, 13:30~14:45	목	2019.09.21	토	2019.09.05, 13:30~14:45	월일만 있음
1313	2019- 2학기	-	교수	-	-	화,목 10:30~11:45 수,금	2019.09.05, 10:30~11:45 2019.10.18,	목	2019.09.21	토	2019.09.05, 10:30~11:45 2019.10.18,	월일만 있음 월일만
1314	2019- 2학기 2019- 2학기	-	교수	-	-	09:00~10:15 화,목	09:00~10:15 2019.10.15,	금화	2019.10.25	금목	09:00~10:15 2019.10.15,	있음 월일만
1316	2학기 2019- 2학기	-	과 ㅜ 강사	-	-	09:00~10:15 월,수	09:00~10:15 2019.9.11,	와 수	2019.12.18,	학 수	09:00~10:15 2019.9.11,	있음 O
1317	2억기 2019- 2학기	-	강사	-	-	12:00~13:15 월,수 12:00~13:15	12:00~13:15 2019.9.9, 12:00~13:15	월	12:00~13:15 2019.12.16, 12:00~13:15	월	12:00~13:15 2019.9.9, 12:00~13:15	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4	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	ㅇ경고(10명)
	제15조 제4항,「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2017)」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	
	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 통 보 -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하고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1회 이상 반드시 방문	대하여 현장지도를
	하여 실제 운영형태 및 여건 등과 실습에 참여한 학생	설급 관리들 설서이
	들의 실습수행 태도 및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7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학생별 담당교수	
	편성 안내」(서강대학교 취업지원팀-274, '17.3.20.)등 서강대학교	
	취업지원팀이 매 학기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산학협력중점교수(현장지도	
	담당)는 학기중 기업 방문과 학생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 서강대학교 ㅁ전공 산학협력중점교수(현장지도 담당) AM은	
	2017. 3. 2.부터 2017. 5. 31.까지 '☆☆'에서 현장실습 중인	
	ㅁ전공 4학년 AN 학생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하지 않는	
	등 【붙임】"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현황"과 같이	
	위 AM 등 산학협력중점교수(현장지도 담당) 10명은 2017	
	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동계학기까지 현장실습생	
	874명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현황

연번	지도교수			ਈ ਜੋ ਈ ਜੀ	7712		현장실습생			1) 스키크)	ואלאו	ス コ ()												
쒼텐	학과	직급	성명	학년-학기	교과목	학과	학년	성명	학번	실습기관	시작일	종료일												
1				2017-1학기	현장실습		4	AN	******	☆☆	2017.3.2.	2017.5.31.												
2				2017-1학기	현장실습	-	4	-	-	-	2017.3.2.	2017.6.14.												
3				2017-1학기	현장실습	-	4	-	-	-	2017.2.22.	2017.6.9.												
4				2017-1학기	현장실습	-	4	-	-	-	2017.2.27.	2017.8.18.												
5				2017-1학기	현장실습	-	3	-	-	-	2017.3.1.	2017.6.30.												
				중략																				
190															AM	2019-동계	경제학현장 실습	-	3	-	-	-	2020.1.2.	2020.1.31.
191		-	- Aw	2019-동계	경제학현장 실습	-	3	-	-	-	2019.12.23.	2020.1.31.												
192							2019-동계	경제학현장 실습	-	3	-	-	-	2019.12.23.	2020.2.28.									
193								2019-동계	경제학현장 실습	-	3	-	-	-	2020.1.3.	2020.1.31.								
194										2019-동계	경제학현장 실습	-	3	-	-	-	2020.2.3.	2020.2.28.						
195									2019-동계	경제학현장 실습	-	4	-	-	-	2020.1.2.	2020.1.31.							
196							2019-동계	경제학현장 실습	-	3	-	-	-	2020.1.6.	2020.2.28.									
197													2019-동계	경제학현장 실습	-	3	-	-	-	2020.1.3.	2020.1.31.			
	중략							-	-	-														
873	D -1-2			2017-하계	물리인턴쉽	-	4	-	-	-	2017.7.3.	2017.7.30.												
874	물리학	-	-	2017-하계	물리인턴쉽	-	4	-	-	-	2017.7.3.	2017.7.3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5	ㄱㄴ대학원 비학위과정(연구과정)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시행세칙」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ㅇ경고(5명)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1.서류전형, 2.면접(영어	
	구술)의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ㄱㄴ대학원은 비학위과정(연구과정) ㅉ 연구	
	과정 52기(2017.1.16. 개강)에 지원한 AO 등 29명에 대하여	
	면접(영어구술)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전형만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등 【붙임】"비학위과정 입학전형 부적정 운영	
	현황"과 같이 서강대학교 ㄱㄴ대학원은 2017년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2개 비학위과정(ㅉ 연구과정, ㄱㄱ	
	연구과정)에 지원한 위 AO 등 769명에 대하여 면접(영어구술)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전형만으로 입학을 허가한 사실이	
	있음.	

비학위과정 입학전형 부적정 운영 현황

연번	과정	7分	개강일	지원자(명)	합격자(명)	전형방법
1		52	2017.1.16.	29	29	
2		53	2017.3.20.	54	54	
3		54	2017.5.15.	31	31	
4		55	2017.7.17.	27	27	
5		56	2017.9.18.	22	22	
6		57	2017.11.20.	23	23	
7		58	2018.1.15.	23	23	
8		59	2018.3.19.	30	30	
9		60	2018.5.14.	38	38	
10		61	2018.7.16.	40	40	
11	双	62	2018.9.17.	27	27	서류/
12		63	2018.11.19.	24	24	면접(영어구술) 미실시
13		64	2019.1.14.	44	44	
14		65	2019.3.18.	32	32	
15		66	2019.5.13.	30	30	
16		67	2019.7.15.	41	41	
17		68	2019.9.16.	28	28	
18		69	2019.11.18.	17	17	
19		70	2020.1.13.	24	24	
20		71	2020.3.16.	26	26	
21		72	2020.5.11.	32	32	
		소	계(21기수)	642	642	
22		10	2017.3.2.	20	20	
23		11	2017.8.24	10	10	
24		12	2018.3.8.	16	16	
25	77	13	2018.8.23.	24	24	서류/
26		14	2019.3.7.	22	22	면접(영어구술) 미실시
27		15	2019.8.22.	17	17	
28		16	2020.3.5.	18	18	
29		3	·계(7기수)	127	127	
		합계		769	769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u>‡</u>
36	ㄱㄴ대학원 비학위과정 위탁운영 부당		
	○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o 기관경고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고,「서강대학교 대학원 학칙」제46조 제1항에	ㅇ경징계(2	명)
	따르면 각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F 11/17 3	n 4 m)
	교육부에서는 대학 내 공개강좌 운영시 운영주체는 학교이고,	○통보(문최	# 1명)
	특정업체 위탁운영은 금지할 것을 2차례 통보('대학원내	○ 통 보	
	공개강좌 운영 철저'(2009. 10. 13.), '대학 내 공개강좌 운영 철저',	- 대학 공기	
	('19. 12. 2.))하였는데도,	특정업체여 하여 운영하	
	- 서강대학교 ㄱㄴ대학원은 2016. 11. 29. '●●'(대표: AP,	1	
	ㄱㄴ대학원 겸임교수)와 ㄱㄱ 연구과정(비학위과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 계약 [*] 을 체결한 후 2017학년도		
	상반기 학생 20명에 대한 용역비 87,840천원을 지급하고		
	업체로 하여금 ㄱㄱ 과정을 운영하게 하는 등 【붙임】		
	"ㄱㄴ대학원 ㄱㄱ 과정 운영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부터 2020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위 ●●와 ㄱㄱ 연구		
	과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 총 127명에 대한 용역비 합계 565,024천원을 지급한		
	후 업체로 하여금 ㄱㄱ과정을 운영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계약기간) 2011.11.28.~2014.11.28., 별도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 (용역비) ●●는 등록금 등 전액을 서강대학교에 입금하고, 서강대학교는		
	입금액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에 지급		
	(용역범위) ①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콘텐츠 제공, ②온라인 매체 홍보 및 방문 홍보, ③교육 교보재 및 자료 제공, ④강사 지정		

ㄱㄴ대학원 ㄱㄱ 과정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0 0101-11	-1) (\b-1) -1	0 04 11 01	الراح و	÷1 →1	학생수	수 ⁷	강료	الراح ال
용역업체	계약기간	용역 범위	용역비	학기	(명)	1인당	합계	용역비
				2017학년도 1학기	20	5,490	109,800	87,840
	- 최초계약일:			2017학년도 2학기	10	5,280	52,800	42,240
	2011. 11. 28. ① 교육프로그램 교육콘텐츠 제 - 계약기간: ② 온라인 매체 및 방문 홍보 2014.11.28. ③ 교육 교보재 및 (별도 통지가 없으면 1년식 ④ 강사 지정 연장)	교육콘텐츠 제공	등록금	2018학년도 1학기	16	5,250	84,000	67,200
●● (대표 AP)		및 방문 홍보	총액의 80%	2018학년도 2학기	24	5,500	132,000	100,800
		제공		2019학년도 1학기	22	5,253	115,576	93,660
		설 경자 시성 		2019학년도 2학기	17	6,578	111,838	89,470
				2020학년도 1학기	18	5,807	104,529	83,814
		합계			127		710,543	565,024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7	비품 관리 부적정	
	○ 서강대학교「비품 관리 규정」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①번 관련>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등록되어 있는 비품에 대하여	ㅇ 기관주의
	관리처장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사용부서는 사용비품의 실태를	<②번 관련>
	직접 조사하여 매 회계연도 2학기 마감일까지 관재시설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품의 차용, 대여 및 수선 등	
	으로 부득이 학교 외로 반출할 때에는 관리처장의 반출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노후 혹은 부분적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은 지체없이 관리	○ 경고(2명)
	처장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부서는 비품의 도난·망실·파손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
	관리처장에게 통보하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고의 또는	실시 · 완료하고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분실 또는 망실한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미실시에 관한 사항】 ①	적의 조치하기 바람
	- 서강대학교는 2018. 7. 16. 2018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시작	
	하고도 미확인되는 자산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기간을 4차례* 연장하면서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2018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 2018.12.5. / 2019.4.12. / 2020.2.26. / 2020.7.2.	
	【비품 미허가 반출에 관한 사항】 ②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서강대학교 AQ는 2017. 7. 27. 취득한 '아이패드 프로	
	10.5'(취득가액:1,567천원)를 해외로 출국한 AR에게 관리	
	처장의 반출허가를 득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게 하는	
	등 【붙임1】 "비품 무단 반출 현황"과 같이 위 AQ 등	
	교수 4명은 2020. 2.부터 2020.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아이	
	패드 프로 10.5′등 비품 총 6점(취득가액 합계 8,779천원,	
	장부가액 합계 4,346천원)을 관리처장의 반출허가를 득하지	
	않고 학교 외로 반출한 사실이 있음.	
	【비품 분실 및 망실에 관한 사항】 ③	
	- 또한, AS는 2017. 7. 20. 취득한 '연구용 아이패드'를	
	고장났다는 이유로 2020. 1. 임의 폐기처분하고 사용부서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붙임2】 "비품 분실 및 망실 현황"과	
	같이 위 AS 등 교수 2명은 위 '연구용 아이패드' 등 비품	
	총 4점(취득가액 합계 7,809천원, 장부가액 합계 3,661천원)을	
	분실 또는 망실 했음에도 사용부서에 보고 및 변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1】

비품 무단 반출 현황

(단위 : 원)

연 번	비품명	모델번호	취득일	취득가액	잔존가액	관련학부	관련 교수명 (반출자명)	반출일	희계
1	아이패드 프로 10.5	МРМН2КН/А	2017-07-27	1,567,000	522,333	-	AQ (AR)	2020.02.04 (해외)	산단
2	노트묵	15Z970-GA7HK	2017-10-10	1,748,780	692,225	-	AQ (AR)	2020.02.04 (해외)	산단
3	태블릿 PC (아이패드)	IPAD PRO 12.9	2018-10-13	1,785,900	1,153,394	-	AQ (AR)	2020.02.04 (해외)	산단
4	아이패드 4 미니 태블릿 PC	IPAD 4 MINI	2017-08-01	622,600	220,504	-	- (-)	2020.02.20 (해외)	산단
5	공정시뮬 레이션용 노트북	A1707	2018-03-12	2,456,190	1,228,094	-	- (-)	2020.02.08 (해외)	산단
6	10.5형 아이패드 에어	10.5형 IPAD AIR WI-FI 64GB-실버	2019-08-19	599,000	529,117	-	- (-)	2020.06.01 (해외)	교비
	합계	-	-	8,779,470	4,345,667	-	-	-	1

【붙임2】

비품 분실 및 망실 현황

(단위 : 원)

연번	비품명	모델번호	취득일	취득가액	잔존가액	관련학부	교수명	분실일 (추정)	회계
1	연구용 아이패드	-	2017-07-20	370,000	172,667	-	AS	2020.01.	교비
2	노트북	15STUDIO G3 M6V81AV	2018-01-17	2,770,000	1,269,583	-	-	2020.2.18. (졸업일)	산단
3	노트북	15STUDIO G3 M6V81AV	2018-01-17	2,770,000	1,269,583	-	-	2020.2.18. (졸업일)	산단
4	노트북	15Z980-GA70K	2018-03-28	1,899,000	949,500	-	-	2020.2.18. (졸업일)	산단
-	합 계	-	-	7,809,000	3,661,333	-	-	-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8	연구실 활동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운영 등 부적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ㅇ기관경고
	제4호,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	
	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개선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개정 2015.7.1.)이고, '연구활동	- 관련법령에 따라
	종사자'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규정을 개정 하고, 향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활동 종사자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속하는 교직원에 대해 규정에서
	대하여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한 시간의 안전 교육·훈련을 실시
	실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2017	
	연구실안전법 해설집」(발간등록번호 11-1710000-000215-14,	
	2017.12.)에 따르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종사자'는 (전임 및 비전임)교수인력, 전임연구원,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	
	활동종사자에게 일정 시간과 내용의 정기 및 신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매년 정기(연간 3~12시간) 및 신규(채용 후 6개월 이내 2~8시간)	
	- 서강대학교는 2017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훈련	
	대상자인 교원 150명을 교육·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연도별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안전교육·훈련 대상자 교육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위 연구활동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종사자 안전교육·훈련 대상자인 교원 총 444명(연인원)을	
	교육·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도별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안전교육·훈련 대상자 교육 미실시 현황

(단위: 명)

연도	총 대상자 수 (C=A+B)	교원* 수 (A)	연구원, 대학(원)생 수 (B)	교육 미실시 인원
2017	3,689	150	3,539	150
2018	3,658	151	3,507	151
2019	3,752	143	3,609	143
합계	11,099	444	10,655	444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9	물품 및 용역계약 입찰공고기한 미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ㅇ주의(5명)
	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	
	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강대학교「구매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학교홈페이지 등 지정 정보	
	처리장치에 공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고	
	입찰의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는 「2019년 달력 및 연하카드 제작」을 계약	
	하기 위해 2018. 10. 5. 전자입찰사이트(www.ebiz4u.co.kr)를	
	통해 입찰공고 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6일 전 공고하는	
	등 【붙임】"입찰공고기한 미준수 계약현황"과 같이	
	2018. 10.부터 2020. 2.까지 위 '2019년 달력 및 연하카드	
	제작'등 총 9건의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을 진행하면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6일 전 입찰공고 한 사실이 있음.	

입찰공고기한 미준수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학		2.2		2.2	2.2		1차 공	ュ			2차 공	ュ	
연 번	- 뛴 내	계약명	예정 가격	계약일	계약 금액	계약 방법	공고 개시일	공고 마감일	않 알	참여 업체 수	공고 개시일	공고 마감일	않 알	참여 업체 수
1	2018	2019년 달력 및 연하카드 제작	34,000	2018- 10-23	33,958	제한	2018- 10-05	2018- 10-11	6	3	-	_	-	-
2	2018	수시모집 논술전형 고사용품(샤프) 구매	25,410	2018- 11-08	24,090	일반	2018- 11-01	2018- 11-07	6	5	-	-	-	-
3	2018	2019학년도 교외 오리엔테이션 전세 버스	39,000	2019- 02-01	35,693	제한	2019- 01-12	2019- 01-18	6	5	-	-	-	-
4	2019	2019년 사업장 대형폐기물 단가계약	51,000	2019- 02-27	49,555	제한	2019- 01-25	2019- 01-31	6	2	-	_	-	-
5	2019	수업용 카메라	25,000	2019- 04-11	22,291	제한	2019- 04-03	2019- 04-08	5	3	-	-	-	-
6	2019	경영전문대학원 동영상 강의 중국어 번역 및 자막 싱크 용역	48,000	2019- 09-02	44,000	수의 (유찰)	2019- 08-12	2019- 08-16	4	1	2019- 08-16	2019- 08-21	5	1
7	2019	서강학보	29,600	2019- 02-13	27,836	수의 (유찰)	2019- 01-23	2019- 01-28	5	0	2019- 01-28	2019- 02-01	4	1
8	2020	2020학년도 외국인 학생 단체보험	104,000	2020- 02-18	98,826	제한	2020- 01-02	2020- 01-07	5	4	-	-	-	-
9	2020	생수 (기기대여 및 소독포함)	32,500	2020- 02-28	22,637	수의 (유철)	2020- 02-03	2020- 02-07	4	1	2020- 02-07	2020- 02-12	5	1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ㅇ경고(1명)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	ㅇ주의(1명)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시정(회수)
	되어 있는데도,	· 미정산된 공사비
	- 서강대학교는 2017. 5. 22. ■■(대표:AT)와 계약(계약금액:	합계 23,582천원을 시공업체(3곳)로부터
	127,050천원, 공사기간: '17.5.22.~'17.6.30.)한 "경제관 인테리어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공사"를 2017. 6. 30. 준공하면서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	하기 바람
	관리비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별도조치>
	조회되지 않는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06천원을 감액	○고발
	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붙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2017. 6.부터 2019. 8.까지 위 "경제관	ㅇ통보(국세청)
	인테리어공사"등 총 6건(계약금액 995,110천원)의 시설공사를	
	준공하면서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23,582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착공일~준공일)	계약금액	구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미정산금액 (환수액)*	공사업체	담당자
			준공시 인정금액	2,206			
1	경제관 인테리어공사 (′17.05.22.∼′17.06.30.)	127,050	감사 인정금액	0 (허위세금계산서)	2,206	■■ (대표:AT)	-
			미정산금액	2,206			
	김대건관 및		준공시 인정금액	7,560			
2	가브리엘관 환경개선공사	295,503	감사 인정금액	0 (허위세금계산서)	7,560	- (대표:-)	-
	('17.07.19.~'17.08.28.)		미정산금액	7,560			
			준공시 인정금액	6,158			
3	김대건관 4층 구조변경공사 ('18.01.23.~'18.03.04.)	243,320	감사 인정금액	0 (허위세금계산서)	6,158	■■ (대표:AT)	-
	,		미정산금액	6,158			
	경제관 3차 및 K406		준공시 인정금액	1,452	1,452		
4	인테리어공사, J관 강의실 환경개선 수장공사	58,740	감사 인정금액	0 (허위세금계산서)		■■ (대표:AT)	-
	('18.02.13.~'18.03.10.)		미정산금액	1,452			
			준공시 인정금액	3,513			
5	현리 철우인성교육원 복구공사 ('18.07.17.~'18.08.20.)	149,497	감사 인정금액	0 (허위세금계산서)	3,513	- (대표;-)	-
	,		미정산금액	3,513			
			준공시 인정금액	2,693			
6	철우만레사인성교육원 입주공사 ('19.07.04.~'19.08.10.)	121,000	감사 인정금액	0 (허위세금계산서)	2,693	■■ (대표:AT)	-
	,		미정산금액	2,693			
			준공시 인정금액	23,582			
	합 계	995,110	감사 인정금액	0	23,582	-	-
			미정산금액	23,582			

^{*}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1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40조 제1항에	ㅇ경고(3╹	평)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ㅇ주의(1吋	경)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사계약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ㅇ시정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 이를 검사하거나	1101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4,148천원 공사비에
	되어 있는데도,		시공업체 부터 재시공
	- 서강대학교는 2017. 7. 20. ▲▲(대표:AU)과 계약한 "김대건관	또는	정산(감액)
	1층 및 지하층 GHP 및 EHP 설치공사"(계약금액:157,418천원,	조치하?	기 바람
	공사기간:'17.7.21.~'17.8.23.)을 진행하면서 출입문 1개소(강재		
	창호)를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재시공 또는 정산(감액)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7.부터 2020. 2.까지 위 "김대건관		
	1층 및 지하층 GHP 및 EHP 설치공사"등 총 4건(총 계약		
	금액; 642,166천원)의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총 5개 항목(약 4,148천원)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정산(감액)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		계약일	계약	계약	공종		시공 내역																				
번	공사명	공사 기간	금액	상대방			실제시공	부적정 내역	금액*	담당자																	
	김대건관 1층 및 지하층	'17.07.20.			<기계>	노출 냉매	노출 냉매 배관 커버																				
1	동 시에상 GHP 및 EHP 설치공사	′17.07.21. ~ ′17.08.23.	157,418	대표 AU	배관 공사		제된 기대 시공 후 도색 미시공	미시공	653	-																	
2	하비에르관 2,3층 강의실	'19.07.04.	174,900	-	<건축> 수장 공사	409호 내벽 전체	라인타공판 약 40% 설치 후 잔여벽체 수성페인트 도장	미시공																			
	환경개선공사 외 2건	'19.07.04. ~ '19.08.16.	174,900	대표 -		라인타공판 설치			1,111	-																	
3	국제문화교육원 강의실	'19.12.24.	286,000	- 대표 -	- 대표 -	- 대표 -	- 대표 -	<건축> 철거 공사	SD 1개소 철거	미시공	미시공	1.649	-														
	환경개선공사 외 4건	′19.12.26. ~ ′20.02.16.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건축> 창호 공사	SD 1개소 설치
4	국제문화교육원 강의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19.12.30. ′19.12.30. ~	23,848	- 대표 -	<전기> 전열 공사	AR900호 전등 22개 설치 K106,110호 노출 콘센트 100개 설치	자재 입고 후 AR900호 전등 22개 미설치 및 K106,110호 노출 콘센트	설치비 미정산	735	-																	
	합계	′20.02.16.	642,166	-	5건	-	100개 재사용 -	-	4,148	-																	

^{*} 순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2	⊙⊙구청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운영 부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경징계(1명)
	제24조 제1항 및「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제25조,	
	제26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 경고(2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고, 단장은	, ,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별도 조치> ○통보(⊙⊙구청)
	산학협력단장은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 8 = (○○ ·8)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구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투자	
	사업(사업명: ㄱㄷ, 총사업비: 1,218,455천원)' 연구책임자 AV는	
	2012년도에 위 사업 '서비스 이용자'(멘티) 247명이 납부한	
	개인 부담금 15,195천원(부담금 총액: 54,961천원, 미납액:	
	39,766천원)을 본인 개인계좌(계좌번호: ****-*****)로 수령하여	
	관리하는 등 【붙임】 "청년사업단 서비스 이용자 본인	
	부담금 현황"과 같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	
	동안 '서비스 이용자'(멘티) 부담금 합계 90,333천원(미납액:	
	64,571천원)을 본인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12년	
	부터 해당 사업의 부담금 지출 서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청년사업단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원)

구분	대상자수 (실인원)	본인부담금(A)	본인부담금 미납총액(B)	본인부담금 실제납부액 (C : A-B)
2012	247명	54,961,000	39,766,000	15,195,000
2013	132명	29,358,000	7,941,000	21,417,000
2014	116명	27,947,000	7,174,000	20,773,000
2015	105명	26,460,000	7,616,000	18,844,000
2016	57명	16,178,000	2,074,000	14,104,000
합 계	657명	154,904,000	64,571,000	90,333,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3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소유 초임계 장비 임대료 미징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ㅇ경고(11명)
	제3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통보
	총괄하며,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료에
	따르면 1호 나의 보통의결 사항에 재무제표를 승인하도록	대해 징수방안
	되어 있고,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출자	(구상권 행사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 및 제11조 제5호에	
	따르면 지주회사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주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학협력단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AW, 학교법인 상임	
	이사 겸임)는 2011. 3. 29. '초임계 장비'(라면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기계, 취득가액: 313,000천원)를 ▶▶(당시 대학의	
	AX가 대주주로 창업한 기업)에 임대 계약*을 체결(임대료	
	합계 410,640천원) 후, 2015. 2. 2.** 기준 임대료	
	164,941천원(임대료 151,700천원, 연체이자 13,241천원)이	
	체납되었는데도, 재무제표 승인 및 결산 시에 회수	
	노력이나 임대차 계약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계약일: 2011.3.29., 계약기간: 7년	
	임대료: 1년~5년 월3,700천원, 6~7년 월7,860천원	
	** AY가 ▼▼에게 38개월, 월 20만원으로 임대계약 체결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4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 주식매각 부적정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산학	○ 경고(2명)
	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 및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회 승인을 얻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사회 규정」제1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신규	
	자회사의 설립 및 설립된 자회사의 매각(보유지분의 5분의	
	1이상) 또는 청산에 대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강	
	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운영위원회를 구성(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산단장,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학교법인 상임이사와 전문가 등)하고, 주주총회는 기술	
	지주회사(자회사 포함) 주식증자, 매각, 일부 양도 등 주식	
	변동과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AW 및 AY는 '15. 2. 27. 서강	
	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고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보유 ◀◀ 주식	
	27,000주를 ◆◆에 1주당 6,000원(액면가의 1.2배), 합계 1억	
	6,200만 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는 '15. 3. 31. 폐업신고하고 '16. 1. 31. 청산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5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집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ㅇ주의(5명)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예산편성절차 : 법인은 10일 전, 학교는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제출 및 1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에 송부)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17.	
	7. 21.에 '&&과 특가법 위반(배임) 위임 계약(보수 1억원/계약금	
	3천만원) 체결에 따른 지출 재원을 '서강사랑기금'으로	
	하기로 결정(기획예산팀 - 994)한 후 '17. 7. 25. 위 계약금	
	3천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 '17. 11. 23. 이사회의 예산소위에서 추경안 의결, '17. 12. 14. 이사회에서 의결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6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 부적정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ㅇ경고(1명)
	산학협력단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연구, 건축, 장학 등의 목적으로	
	적립할 수 있고, 이 적립금은 정관상의 예·결산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서강대학교	
	연구·산학 총괄위원회 규정」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위원회	
	(대외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산학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대외부총장, 관련학부	
	학장 3인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추천한 법인 이사회 이사 중 1인은	
	임명직 위원으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는 산학	
	협력단 적립금 인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9. 6. 4. 대학이 산학협력단에	
	교비회계에서 집행('17. 7. 25.)한 '소송비용' 관련 계약금	
	30,000천원을 전출 요청(6. 11.에 재요청)하자 연구・산학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개최('19. 6. 21.)하여 '산학협력단 후속조치를 위한 &&과의	
	변경합의 약정서'및 '위임계약 추가약정서' 체결을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 소송경비 중 기부금	
	으로 기 지급 처리한 예치금(선금) 30,000천원을 산학협력단	
	비용에서 전출함'으로 심의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7	특허권 및 노하우(Know-how) 이전 부적정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경영관리위원회 규정(*17. 12. 6.	○ 경고(3명)
	제정)」제2조 및「(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관리규정('01. 1. 16. 제정)」제11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기술경영관리위원회(구,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를 두어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양도, 실시허여, 기술	
	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창업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교수창업자는 창업 후 매 1년마다 기술	
	이전을 통해 학교에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하고, 기술이전	
	해당 기술의 가격은 기술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년에 '강화학습을 이용한	
	대화관리기 훈련 기술'을 노하우(Know-How) ¹⁾²⁾ 형태로	
	★★에 이전하면서 기술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6,200천원에 이전하는 등 【붙임 1】"2017년 특허권 및	
	노하우 기술 이전 내역"과 같이 위 '강화학습을 이용한	
	대화관리기 훈련기술'등 총 93건을 업체에 기술이전 하면서	
	기술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도록 한	
	가격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계 831,230천원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 2018년부터는 특허권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	
	· 특히 연구책임자 AZ는 2017년 '에스엔피 케어 노하우'를	
	연구책임자 본인이 가격(4,200천원)을 결정하고 동 가격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따라 기술을 이전하는 등 【붙임 2】 "교수 창업기업	
	대상 노하우 기술이전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위 '에스엔피 케어 노하우 기술이전' 등 총 5건,	
	합계 54,200천원을 기술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연구책임자가 정한 가격에 따라 연구책임자인 본인이	
	창업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사실이 있음.	

¹⁾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컴퓨터프로그램, Know-how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조 4호)

²⁾ 노하우(Know-how)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과 그 기술의 사용이나 응용방법 및 경영상, 영업상 비밀과 지식재산 내용에 관한 비밀 지식 또는 경험을 말한다.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조 15호)

【붙임 1】

2017년 특허권 및 노하우 기술 이전 현황

연번	계약형태	기술명	이전업체명	금액
1	노하우	강화학습을 이용한 대화관리기 훈련 기술 노하우 이전	**	16,200
2	노하우	악안면 성장치료 후의 이미지 판단과 자세 교정 노하우	-	14,000
3	노하우	센서 연동 VR 풋 컨트롤러 개발을 위한, 센서 기술 및 VR 장비 연동 노하우 기술이전	-	22,800
4	노하우	컨텐츠와 딥러닝 및 빅데이터 연동을 통한 Mixed Reality 기반 통합 UX 설계 노하우	-	19,200
5	노하우	천연물추출물을 함유하는 수제화장품 개발제품 기술노하우 및 교육사업구성 관련지원	-	17,400
•••	중략			
81	노하우	빌트인 수경재배기 웹 & 앱 제어 시작품 개발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2,400
82	노하우	온라인 음악 연주 평가 서비스 개발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4,500
83	노하우	지문인식용 개발보드 제작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4,500
84	노하우	영화컨텐츠 플랫폼 오브에프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3,000
85	특허양도	황토입자를 탑재한 고분자 미립구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포함한 플라스틱 용기 기술이전	-	4,000
86	노하우	치아 임플란트 어브트먼트 5축 가공기 제작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6,000
87	노하우	수학 보드게임 어플리케이션 제작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4,500
88	노하우	전도성 잉크를 이용한 홀로그래픽 아트웍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2,700
89	노하우	쌀 발효종 동결건조 제품 제작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3,000
90	노하우	Analog SMS 개발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2,400
91	노하우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소재개발 (MPS)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4,500
92	노하우	Flat top collimated beam 생성기 제작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4,500
93	노하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쿠폰 발행과 기존 POS와 데이터 연동되는 오프라인매장용 단말기개발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	-	4,500
		합계		831,230

【붙임 2】

교수창업기업 대상 노하우 기술이전 현황

연도	기술명	연구책임자	이전업체명 (창업자)	금액
2017	에스엔피 케어 노하우 기술이전	AZ	- (AZ)	4,200
2017	3D 물방울 조형 생성 기술	-	- (-)	10,000
2018	포그 스크린 생성 기술	-	- (-)	5,000
2018	바이오마커 기반 진단법개발	AZ	- (AZ)	25,000
2019	미세 신호처리용 저잡음, 저소음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처리 하드웨어 설계 노하우(Know-How) 기술	-	- (-)	10,000
	합 계			54,2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8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학점 부여 부당	
48	○ 「서강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9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서강대학교 학칙」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담당 교수는 수업 시작 시 출결을 점검하며, 수업 시작 후 15분 이내의 출석은 지각으로, 15분 후의 출석은 결석으로 간주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BA는 산학협력단 직원(근무시간: 9시~17시) BB(일반대학원 ¬르과 재학)가 2019학년도 1학기 '법과 지식 산업'(금요일 16:30 ~ 19:15) 과목을 수강하면서 매 수업마다	○ 통보 - 산학협력단 직원 BB가 출석없이 취득한 학점(법과 지식산업 등 9학점)을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30분씩 지각하였음에도 출석으로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서강대학교 BC는 위 BB가 2019학년도 1학기 '지식 재산권 입문'(수·금요일 13:00~16:45) 과목 및 '상표법 기초' 수업(수·금요일 15:00~16:45)을 결석하였는데도, 매주 출석 하였다고 출석부에 기재하여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9	직무발명 미신고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직무	○경고(8명)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 통보 - 개인명의로 출원·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된 지식재산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종업원등이	38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지체심의 등을 거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이	변경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를 승계하며,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ㄱㅁ과 BD는 2015. 9. 9. 'ㄱㅂ' 직무발명을	
	하고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는 등 【붙임】 '직무발명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03. 12.부터 2019. 4.까지 위 BD	
	등 교원 8명이 총 38건의 직무발명을 하고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직무발명 미신고 현황

연번	권리자	소속	권리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1				ПН	- (2015.9.9.)	(2016.6.24.)
2	BD	ㄱㅁ전공	특허	-	-	101812222 (2017.12.19.)
3	_	<u>-</u>	특허	-	(2016.2.25.)	101801026
					(2016.1.27.)	(2017.11.20.) 101563582
4				-	(2013.10.22.)	(2015.10.21.)
5	-	아트& 테크놀로지	특허	-	- (2012.9.26.)	101517399 (2015.4.28.)
6				-	- (2016.5.20.)	101844556 (2018.3.27.)
	중략				,	,
22			디자인		- (2016.4.20.)	(2016.9.23.)
23			상표		- (2015.9.3.)	- (2016.5.11.)
24			디자인		(2016.3.29.)	(2016.9.23.)
25			디자인		(2016.3.29.)	(2016.9.23.)
26			디자인		(2016.3.29.)	(2016.9.23.)
27			디자인		(2016.3.29.)	(2016.9.23.)
28			상표	-	- (2015.9.3.)	(2016.5.11.)
29	_	_	상표		- (2015.9.3.)	- (2016.5.11.)
30			상표		- (2015.9.3.)	(2016.5.11.)
31			디자인		- (2016.5.4.)	- (2016.11.21.)
32			디자인		- (2017.3.29.)	(2018.1.24.)
33			상표		(2015.9.3.)	(2017.10.31.)
34			상표		(2018.1.4.)	(2018.10.24.)
35			상표		(2018.8.20.)	(2019.7.18.)
36			상표		- (2018.8.20.)	- (2019.7.18.)
37			상표		(2018.8.20.)	(2019.7.18.)
38	-	-	상표		(2019.4.9.)	(2020.1.7.)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0	연구비 구매 물품 미검수	
	○「서강대학교 구매 규정」제2조 및 3조에 따르면 '물품'	○ 경고(6명)
	이라 함은 원자재, 기자재, 가공품, 소모품, 각종 인쇄물	
	등 내·외자로 구매하는 제품을 총칭하고, '구매'라 함은	
	물품구입, 시설공사 및 용역 등 발주를 총칭하며, 교내	
	연구비 및 외부 기관의 연구과제 수탁에 의한 연구비로	
	구매하는 300만원 미만의 집기비품, 연구용역, 인쇄비와	
	500만원 미만의 실험실습용품과 전산용품 및 1,000만원	
	미만의 연구용 기계기구와 시작품 제작은 해당 사용부서	
	에서 자체 구매(발주)할 수 있고, 「서강대학교 검수 규정」	
	제3조 제6호 및 제4조에 따르면 '검수'라 함은 본교에	
	반입된 모든 물품 및 공사 등에 대하여 관계서류와 대조	
	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일이고, 자체 구매(발주)	
	하는 물품 및 용역, 도서, 도서(전자자료),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콘텐츠, 임차권리권,	
	기타무형자산은 예산소관부서에서 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3. 1. BE가 연구과제(ㄱ스,	
	연구기간: 2015. 12. 1. ~ 2017. 11. 30., 지원액: 16,900천원)를	
	수행하면서 자체 구매한 물품인 Advanced Drug	
	Delivery 디지털북(161,899천원)에 대해 검수하지 않는 등	
	【붙임】"교내 및 교외 연구과제 물품 미검수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0. 6.까지 위 BE 등 625명이 구매한	
	위 Advanced Drug Delivery 디지털북 등 총 44,067건,	
	합계 31,603,988천원에 대해 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교내 및 교외 연구과제 물품 미검수 현황

연번	구분	학년도	교내연구과제 및	교외연구과제	
원 원	丁 ゼ	박전도	건수	금액	
1	교내 연구과제 -	2017	2,010	466,781	
2		2018	1,975	537,750	
3		2019	1,763	653,085	
4		2020.6.	538	94,758	
	소계		6,286	1,752,374	
5		2017	11,104	9,313,838	
6	교외 연구과제	2018	11,491	8,830,060	
7	교의 연구과제	2019	10,852	8,715,563	
8		2020.6.	4,334	2,992,148	
	소계		37,781	29,851,609	
	합계		44,067	31,603,988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1	교내 연구과제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제출	
	○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규정」제9조에 따르면 연구	【① 관련】
	책임자는 사업별 해당하는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ㅇ경고(5명)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학	
	협력단에 제출해야 하고, 연구결과물은 연구 종료 후	【② 관련】
	2년 이내에 게재(SSCI, SCOPUS, 연구재단 등재지 등)한 후	○주의(16명)
	해당 내용을 위 대학 자체 포탈 SAINT에 입력하고 산학	, ,
	협력단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교내연구과제 신청 요강에서 세부 사업별 연구결과(연구결과	
	보고서,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달리함	
	【연구결과물 미제출】 ①	
	- 서강대학교 BF는 2016년도 교내연구과제인 'ㄱㅇ'(연구	
	기간: 2016. 1. 1. ~ 2016. 12. 31., 지원액: 1,935천원)을 수행하면서	
	연구결과물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1】 "교내	
	연구과제 연구결과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위 BF 등 교원 5명(중복포함)은	
	총 7개의 교내 연구 과제 종료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②	
	- 서강대학교 BG는 2016년도 교내연구과제 'ㄱㅈ'(연구기간	
	2017. 7. 1. ~ 2018. 6. 30., 지원액: 1,013천원)를 수행하면서 연구	
	결과물을 제출기한인 2018. 9. 30.에서 508일이 지난	
	2020. 2. 20.에 제출하는 등 【붙임2】 "교내연구과제 연구	
	결과 지연제출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0. 7. 감사일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현재까지 위 BG 등 교원 16명(중복포함)은 총 21개 교내	
	연구 과제 종료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으로부터 짧게는	
	32일 길게는 508일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 미제출 현황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 시작일	연구 종료일	연구결과 제출기한
1	ㅊ학과	부교수	BF	70	1,935	2016.1.1.	2016.12.31.	2017.3.31.
2	-	교수		-	229	2016.6.1.	2017.5.31.	2017.8.31.
3	-	立 수	-	-	1,900	2016.6.1.	2017.5.31.	2017.8.31.
4	-	교수	-	-	3,800	2016.8.1.	2017.7.31.	2017.10.31.
5	-	조교수		-	10,000	2015.11.1.	2016.10.31.	2017.11.30.
6	-	조교수	-	-	10,000	2016.9.1.	2017.8.31.	2017.11.30.
7	-	교수	1	-	7,000	2017.12.1.	2018.11.30.	2019.2.28.

【붙임 2】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 지연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일)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 시작일	연구 종료일	연구결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 기간
1	-	교 수	BG	コス	1,013	2017.7.1.	2018.6.30.	2018.9.30.	2020.2.20.	508
2	-	교 수	-	-	8,000	2015.5.1.	2016.4.30.	2018.4.30.	2019.8.9.	466
3	-	교 수	-	-	2,800	2017.9.1.	2018.8.31.	2018.11.30.	2020.1.31.	427
4	-	부교수	-	-	15,000	2016.1.21.	2017.1.20.	2017.4.21.	2018.3.28.	341
5	-	교 수		-	11,754	2017.61.	2018.5.31.	2018.8.31.	2019.6.10.	283
6	-	교 수	-	-	600	2017.6.1.	2018.5.31.	2018.8.31.	2019.6.10.	283
•••	중략									
14	-	교수	-	-	5,400	2017.12.1.	2018.11.30.	2019.2.28.	2019.6.1.	93
15	-	부교수	-	-	10,000	2016.3.1.	2017.2.28.	2019.5.31.	2019.8.2.	63
16	-	부 교 수		-	20,000	2017.3.1.	2019.2.28.	2019.5.31.	2019.8.2.	63
17	-	교 수	-	-	10,300	2018.7.1.	2019.6.30.	2019.9.30.	2019.11.30.	61
18	-	교 수	-	-	50,000	2017.3.1.	2018.2.28.	2018.5.31.	2018.7.19.	49
19	-	교 수	-	-	15,000	2018.8.1.	2019.2.1.	2019.3.1.	2019.4.12.	42
20	-	교 수	-	-	6,300	2017.5.1.	2018.4.30.	2018.7.31.	2018.9.6.	37
21	-	교 수	-	-	6,400	2016.2.1.	2017.1.31.	2017.4.30.	2017.6.1.	32

【붙임】

학술도서 귀속(비치대장) 관리 및 공동사용 미조치 현황

연번	연도	권수	금액
1	2017	2,124	65,743
2	2018	4,396	165,863
3	2019	5,655	239,877
4	2020	2,874	94,100
합계		15,049	565,584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3	연구노트 관리 소홀	
	○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1조에 따르면 연구	ㅇ기관경고
	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	
	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고, 「교육부 소관 이공	ㅇ통보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4조에 따르면 연구개발	- 미제출된 연구노트
	사업을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관리의 의무를 성실히	및 관련 지료를 산학
	이행하여야 하며, 「서강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협력단에서 제출받아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보관 관리하기 비람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산학협력단	
	에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강대학교 스과 BI는 'ㄱㅋ' 과제(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간: 2017.3.1.~2020.2.29., 연구바: 100,000천원)의 연구책임자로 연구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연구노트와 관련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연구노트미제출 현황"과 같이 2017.3.부터 2020.7.감사일 현재까지 위 BI 등 연구책임자 349명은 연구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연구노트 및 관련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연구노트 미제출 현황

연 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Z =1 -1 -1	,
		시작일	종료일	소속	직급	성명	주관기관	연구비
1	77	2017.3.1.	2020.2.29.	-	연구교수	ВІ	(재)한국 연구재단	100,000
2	-	2015.5.1.	2018.4.30.	-	교수	-	(재)한국 연구재단	39,329
3	-	2016.11.1.	2019.10.31.	-	조교수	-	(재)한국 연구재단	100,000
4	-	2016.11.1.	2019.10.31.	-	교수	-	(재)한국 연구재단	16,666
5	-	2019.3.1.	2020.5.31.	-	부교수	-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9,086
	중략							
342	-	2014.11.1.	2017.10.31.	-	교수	-	(재)한국 연구재단	303,000
343	-	2013.9.1.	2019.8.31.	-	교수	-	(재)한국 연구재단	179,258
344	-	2017.3.1.	2020.2.29.	-	책임 연구원	-	(재)한국 연구재단	50,000
345	-	2016.6.1.	2019.5.31.	-	부교수	-	(재)한국 연구재단	19,167
346	-	2014.6.1.	2017.5.31.	-	교수	-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76,000
347	-	2014.6.1.	2019.12.31.	-	교수	-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50,000
348	-	2019.3.1.	2020.2.29.	-	교수	-	(재)한국 연구재단	51,700
349	-	2011.11.1.	2020.5.31.	-	교수	-	(재)한국 연구재단	150,000